



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내지12호통합

2022년9월
서울고등법원
판례위원회

머 리 말

「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가 처음 세상에 나온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매월 발행되던 속보가 드디어 제12호까지 나왔고, 이제 1년치를 묶은 두 번째 통합본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통합본에서는 기존 판결속보 선정기준과 전담분류에 따른 편성 체계를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첫째, 민사 및 행정 사건 외에 가사 사건이 추가되어 민사 다음으로 편제되었고, 행정 난민과 산재 사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둘째, 속보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속보자료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처음의 목차 페이지로 되돌아갈 수 있는 링크를 삽입하였고, 대상판결이 항소기각 결론인 경우에는 종국결과 부분에 1심 결론을 괄호 안에 밝힘으로써 가독성을 높이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대상판결들의 확정 여부와 상고심 결과 등을 현재 기준으로 업데이트 추적하여 표시하였고, 위원회 논의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일부 사건은 통합본 편집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판결속보가 「법률신문」에도 게재되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재야 법조와 학계 등에도 서울고등법원의 중요 판결·결정들이 공개되고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재판의 투명성 증진, 하급심 판결공간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에 한 발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앞으로 6개월 간격으로 발간되는 통합본 파일(PDF)의 경우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판례위원회 위원들은 본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므로, 상업적인 이용과 내용변경 이외에는 법원 안팎 독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복사, 편집, 출력, 제본 등 이용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 판사님들께, 그리고 더운 여름에도 꾸준히 열정을 쏟아 땀방울 흘린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 9. 21.

서울고등법원 판례위원회 위원장 홍승면

머 리 말(초판)

처음 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이의영 고법판사님이 저를 찾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작년 7월이었습니다. 8월 판례위원회 구성모임을 거쳐 법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 속보자료의 틀과 자료취합의 기준·주기·방법 등을 정하여 2021년 10월에 속보 제1호가 나왔습니다. 이후 많은 재판부의 동참과 격려 속에서 매달 속보가 추가되어 2022년 3월에는 속보 제6호의 발행과 함께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모은 통합본 책자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고등법원 판결을 비롯한 하급심 판결은 사실인정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구체적 사실관계에 추상적 법리를 적용하는 법관의 판단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대법원판결의 중요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급심의 판결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님들이나 송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님들께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하급심판결의 전면공개 시행을 앞두고 판결 공간의 확대에 대한 재야와 학계의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저희는 판결속보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중요판결들을 널리 알려서 공유하는 것이 더 좋은 재판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판결속보의 선정기준은 ① 시의성 있는 판결(일반의 주목을 받은 사건), ② 다수의 관련 사건이 있는 판결, ③ 법리상 중요한 사건(새로운 판시), ④ 기존 법리의 발전된 적용 사건(새로운 유형), ⑤ 민사 일반 법리 공부에 도움이 될 사건 등이고, 민사 및 행정 사건의 판결 및 결정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담 분야별로 편철을 하여 관심에 따라 찾기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여러 독자(讀者)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바탕으로 꾸준히 개선해 가겠습니다. 열정으로 뭉쳐 자발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저희 위원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조언 등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시도에 관심과 애정으로 동참해주신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님들께, 그리고 자료취합과 편집 등 수고를 아끼지 않은 판례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3. 22.

서울고등법원 판례위원회 위원장 홍승면

편집위원 명단

구분	성 명	비고(전담분야등)
위원장	홍승면 부장판사	건설
간 사	이의영 고법판사	국제거래·중재
위 원	김광남 고법판사	항고
위 원	김길량 고법판사	언론
위 원	김선아 고법판사	지식재산
위 원	김세종 고법판사	상사·기업
위 원	김재령 고법판사	건설
위 원	박성윤 고법판사	국제거래·중재
위 원	방웅환 고법판사	의료
위 원	이병희 고법판사	공정거래·노동
위 원	이숙연 고법판사	노동
위 원	이완희 고법판사	조세
위 원	이준현 고법판사	항고
위 원	정문경 고법판사	언론
위 원	정현경 고법판사	노동
위 원	장정환 고법판사	공보관(2022년)
위 원	한기수 고법판사	공보관(2021년)

※ 본 저작물은 상업적인 이용과 내용변경 이외에는 독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복사, 편집, 출력, 제본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이에 관한 편집위원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목 차

I. 민사	1
1. <u>건설</u>	1
2. <u>국제거래</u>	4
3. <u>노동</u>	13
4. <u>상사</u>	31
5. <u>언론</u>	44
6. <u>의료</u>	50
7. <u>중재</u>	54
8. <u>지식재산</u>	57
9. <u>일반</u>	65
10. <u>항고</u>	129
II. 가사	137
1. <u>항고</u>	137
III. 행정	140
1. <u>공정거래</u>	140
2. <u>난민</u>	149
3. <u>노동</u>	150
4. <u>산재</u>	159
5. <u>조세</u>	161
6. <u>일반</u>	180
7. <u>항고</u>	209

서울고등법원 2021년 9월~2022년 8월 중요 판결·결정1)

민 사

2021나2009331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확정

[제6-3민사부 2021. 11. 24. 선고] <건설>

□ 사안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 담보책임을 구한 사안

□ 쟁점

하자의 발생시점에 따라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달라지는 경우로서, 하자 발생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피고)

□ 판단

- 집합건물법(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1, 2항과 집합건물법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5호로 개정된 것) 제5조에 의하면,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기산일(전유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의 경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5년이 되는 반면에, 기산일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하자의 성질에 따라 2년, 3년, 5년이 됨
-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점,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는 해당 하자의 발생시점에 따라 제척기간 자체가 달라지는데, 이와 같은 제척기간은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요건사실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인 점,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체계와 집합건물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 그와 같은 하자가 기산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자(=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1) 2021년 8월 내지 그 이전 판결·결정 일부를 포함하고, 민사, 가사 및 행정 사건을 대상으로 목차의 사건분류(가나다순)에 따라 선고일자 순서로 편철함

2018나2016674 하자보수금 등

확정

[제22민사부 2021. 11. 25. 선고] <건설>

□ 사안 개요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분양’은 ‘분양계약의 체결’로, ‘분양된 건물’은 ‘개개의 구분건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개정법 시행 후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전환세대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개정법을 적용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한 사안

□ 쟁점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의 ‘분양된 건물’의 의미

□ 판단

-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의 ‘분양된 건물’은 개개의 구분건물이 아닌 ‘1동의 건물 전체’를 의미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1동의 건물 중 일부 세대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1동의 건물 전체가 ‘분양된 건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1동의 건물 중 일반분양세대와 분양전환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① ‘분양’이란 1동의 건물을 구조상으로 구분하여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나눈 후 각 구분된 부분을 매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②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부분’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은 집합건물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법률 규정의 체계에 부합함
- ③ 미시공·오시공 등 공사의 잘못은 적어도 1동 건물의 건축이 완성되어 일부 세대에게 분양될 당시부터는 분양자의 책임 영역에 들어서기 시작하므로, 신뢰보호나 공평의 견지에서도 타당함
- ④ 개정법 시행 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일부 세대에 대하여 단축된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입법목적에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피고가 개정법 시행 전에 일부 건물부분인 일반분양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로서 구 집합건물법이 적용됨 (원고일부승)

2021나2031352 약정금

확정

[제21민사부 2022. 1. 20. 선고] <건설>

□ 사안 개요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시행사인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후, 시공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민법상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하자보수 공사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여 피고들이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채무승인을 한 것인지 여부(소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① 이 사건 합의서는 그때까지 발견된 하자를 서로 확인하여 피고들이 이를 보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합의서에 그 당시 발견되지 아니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 점
 - ② 오히려 하자보수를 실시하기로 약정한 보수공사를 완료하면 피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의제기 및 추가 요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던 점
 - ③ 이 사건 소송은 합의서에 따라 시공한 보수공사 후에 계속 존재하거나 새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것인 점 (원고일부승)

2021나2003630 보증채무금

확정

[제33민사부 2021. 10. 14.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항공기를 임대한 스웨덴법인이 임차인 필리핀법인의 보증인(국내 관계회사의 대표자)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미합중국 뉴욕주 법이 준거법인 보증계약에 대한민국 민법 제428조의3 규정이 국제사법 제7조의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개정이 국제적 거래관계에 따른 상사 보증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라마다 강행법규가 다양한 상황에서 국제적 계약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계약 당사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당사자 자치를 보장한 취지, 피고가 주된 의무자(primary obligor)로서 독립된 채무를 지고 그 책임의 항목과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
- 영국 잉글랜드 법이 준거법인 항공기 임대계약에서 보증금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를 임대인의 선택에 따르도록 정한 조항의 효력(=유효) 및 주채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의한 상계 여부(소극)
-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지정된 계약의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해 대한민국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율의 적용 여부(소극) (원고일부승)

2020나2017038 양수금

상고심 계속중

[제19-1민사부 2021. 10. 27. 선고] <국제거래, 도산>

□ 사안 개요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 체결 후, UK Tax Lease 거래를 활용하여 법인세 감면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영국 금융기관 등 다수의 당사자들 사이에 나용선자가 영국 과세제도 변경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로 하는 면책의무를 추가한 변경계약이 체결됨
- 면책청구권을 양수한 원고가 이를 공익채권으로 주장하며 회생절차가 종결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당초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과 그 이후 체결된 위 면책의무를 정한 변경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쌍방의 채무 사이에 견련성을 인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의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쌍무계약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변경계약이 원계약과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대가관계를 구성한다거나, 위 면책청구권이 원계약상 권리와 본래적 견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위 면책청구권은 회생채권이어서 별도의 이행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소각하)

2019나2040476 손해배상(기)

상고심 계속중

[제19-2민사부 2021. 11. 24.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가 캐나다 법인인 피고에게 헬리콥터 엔진의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수리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① 피고가 정비한 엔진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민법 제667조 제2항) 내지 엔진 수리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② 소유권에 근거하여 헬리콥터 엔진의 인도를 구한 사건

□ 쟁점

- 손해배상금 청구의 준거법(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의 추정 복명 여부)
- 헬리콥터 엔진 인도 청구의 준거법(= 항공기에 관한 물권의 준거법)

□ 판단

-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엔진 수리계약의 용역이행자인 피고의 상거소가 있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으로 추정되기는 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의 추정은 반복되어 이 사건 엔진에 대한 수리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대한민국 법이라고 봄이 타당함
 - ① 피고는 항공기 정비업체로서 전 세계에 걸쳐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 ② 이 사건 엔진에 그와 같이 수리된 연료제어장치 등이 교체 장착되는 작업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짐
 - ③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수리 과정 잘못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연료제어장치 등을 교체 장착하고 이 사건 엔진을 기체에 분리·장착하는 등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④ 이 사건 사고 발생지 및 피해 발생지는 대한민국임
- 국제사법 제20조는 항공기에 관한 물권은 그 국적소속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항공기’에는 헬리콥터가 포함되고(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 참조), 이 사건 엔진은 독립하여 고유한 효용을 가지는 동산이 아니라 이 사건 헬리콥터에서 일시적으로 떼어낸 구성품이므로, 이 사건 엔진의 물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헬리콥터의 물권에 관한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이 사건 헬리콥터를 매수한 후 대한민국에 이를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엔진 인도청구의 준거법은 이 사건 헬리콥터의 국적 소속국인 대한민국의 법임 (원고패)

2021나2006745 보험금

확정

[제19-1민사부 2021. 11. 24.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화물 양륙 과정에서 선박에 균열이 발생하여 침수된 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권의 질권자인 원고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 쟁점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강행규정인 대한민국 약관법의 적용 여부

□ 판단

-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서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보험계약이 준거법 지정 외에 외국적 요소가 없는 순수 국내 계약인 경우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강행규정인 약관법이 적용될 수 있음(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 11885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보험명세서가 영어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 회사인 점, 이 사건 선박도 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점,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항행구역이 대한민국 연안 해역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지도 대한민국인 점, 보험가액, 보험료 등이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에 의해 영국법에 따르도록 정한 것 외에 외국적 요소가 전혀 없으므로,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인 약관의 설명의무를 규정한 약관법 제3조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된다고 판단함 (원고일부승)

2021나2010140 손해배상(기)

심불기각 확정

[제33민사부 2021. 11. 25. 선고] <국제거래, 해상>

□ 사안 개요

국내 운송회사가 스위스 해상운송회사를 상대로, 노르웨이에서 수입된 기계의 수침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위반 여부(소극)
- 준거법이 영국법인 사안으로서, 재판적 면책특약에 따른 면책 여부(소극), ‘송하인의 동의 없는 재판적 운송’ 해당 여부(소극)
- ‘포장불충분에 따른 면책’ 관련 증명책임의 분배 [해상운송인이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것이 포장불충분 등 면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면 되고, 그 증명의 정도는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다는 일응의 증명(prima facie)으로서 충분함. 그 경우 화주가 위 손해는 해상운송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
- 포장불충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 [항소기각(원고패)]

2020나2002708 약정금

상고취하 확정

[제19-3민사부 2021. 12. 8. 선고] <국제거래, 해상>

□ 사안 개요

싱가포르의 해상운송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선 운송에 관한 선복예약계약에 따른 운임과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 여부(소극) [이면약관상 관할합의 조항 후단의 내용에 따라 선적항이 위치한 대한민국에도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됨. 설령 영국 법원으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2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한 변론만을 하여 1심판결이 선고된 점, 국제재판관할에서 민사소송법 제30조와 같은 변론관할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점 등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음]
- 준거법인 외국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대한민국법과 영국법이 당사자 의사 내지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달리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법과 일반 법원리에 따라 판단한 사례
- 피고1의 지위(= 이 사건 부선의 실질적 수출자인 A의 요청으로 신용장 거래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및 그에 대해 선복예약서 및 이면약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피고2의 지위(= 이 사건 이면약관에서 정한 ‘화주’의 개념에 포함되는 자로서 위 약관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
- 피고3(= 대리인인 피고2를 통하여 원고와 이 사건 부선 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에 이 사건 이면약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 피고2와 피고3이 이 사건 부선 본체의 중량을 실제보다 적게 고지하는 바람에 이 사건 부선을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약정상 운임 및 체선료의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일부승)

2020나2035173(본소), 2020나2035180(반소) 손해배상(기)(본소), 운송료(반소)

[제33민사부 2021. 12. 9. 선고] <국제거래>

심불기각 확정

□ 사안 개요

원고가 아일랜드의 A회사에 DDU조건(관세미지급인도조건)으로 정밀기계를 수출하면서 피고에게 항공 및 육상에 의한 국제운송을 의뢰하였는데, 더블린 공항에 도착하여 현지 운송업체 B의 창고까지 육상운송 후 하역 과정에서 화물박스가 파손되고 B가 반출을 거부하자, 원고가 A회사에 대체품을 제공하고 피고를 상대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운송계약의 성격(= 항공운송과 육상운송이 결합된 복합운송계약), 피고의 운송 중 사고 해당 여부(적극) [더블린 공항에서 수입통관 후 B를 통한 육상운송 중 DDU조건에 따른 인도장소인 A의 주소에 도착되기 전 B의 창고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운송 중 사고에 해당함]
- 몬트리올 협약 또는 상법이 정한 항공운송 중 손해배상책임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 상법 제135조에 따른 육상운송 중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적극) [B의 인도거절로 이 사건 화물이 수하인 A에 인도될 수 없는 멸실 상태에 이른 점을 인정함]
- 상법 제147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121조의 1년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날’), 단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같은 조 제3항의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해당 여부(소극) [소멸시효완성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함] [항소기각(원고패)]

2020나2033450(본소), 2020나2033467(반소) 상표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본소),
물품대금(반소) 확정

[제33민사부 2022. 1. 20.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호주의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인 원고가 국내 개인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미세바늘 피부미용기기 EPEN 제품 공급계약의 제3자 판매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본소로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물품대금 내지 손해배상과 연간 보증발주량 부족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준거법의 결정[= 본소 청구인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반소 청구 중 물품대금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본소 청구 관련 소멸시효와 상계 및 반소 청구 중 위약금청구 등에 관해서는 CISG에서 규율하지 않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 또는 상법 규정이 적용됨]
- CISG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계약위반과 조건설에 따른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완전배상주의에 따르되 예견가능성에 의하여 제한되고, 그 증명의 정도는 법정지의 절차법에 따름),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제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
- CISG에 따른 계약해제의 요건(= 계약불이행이나 계약위반으로 인한 해제권 행사의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지 않음) 및 효과(= 청산효과설에 따르며, 손해배상무무를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을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하게 함), 손해배상의 범위(= 계약해제 후 청산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도 포함하여, 일방당사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체거래를 한 경우 대체거래의 대금과 계약대금간의 차액이 손해), CISG 제81조는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합의해제에도 유추적용 되는지(적극),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물품대금청구는 인정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도 피고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한 사례
- CISG 제71조에 따라 발주의무가 정지되어 위약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위약금 감액 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장된 기준일에 따라 의무 발주물량 부족에 따른 위약금 산정을 인정한 사례 (원고일부승)

2020나2001019 손해배상(기)

심불기각 확정

[제33민사부 2022. 4. 21.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원고는 피고가 개발한 의료기기를 전 세계에 독점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와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미국 FDA가 의료기기 판매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되는 위법한 제품임을 이유로 미국 내 제조·판매 행위의 영구 중지를 명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의 준거법[=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인 미국 플로리다주 법(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1조)]
- 미국 플로리다주 법상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가부와 그 요건(=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 증명), 피고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 인정 여부(소극)
- 미국 플로리다주 법상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요건(=당사자 일방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계약 취소를 불허하는 것이 불공정하고, 계약을 신뢰한 상대방이 계약의 취소가 부당할 정도로 입장을 크게 변경하지 않았어야 하며, 그 착오가 계약의 매우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함),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의 등급과 소재에 대하여 착오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 미국 플로리다주 법상 이 사건 계약 취소권의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미국 플로리다주 법상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와 권리를 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인수한 회사의 주식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였고 그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주식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지위와 권리를 원상회복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 (원고패)

2019나2036668(본소), 2020나2018147(반소) 임금(본소), 기타(금전)(반소)

[제15민사부 2021. 8. 13. 선고] <노동>

확정

□ 사안 개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잠탈로 무효라는 환송판결이 있었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사건

□ 쟁점

- 환송판결 전 체결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방법
- 만근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의칙 위반 여부, 부당이득 성립 여부

□ 판단

- 부제소합의 효력이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만 미친다고 판시
- ‘월 법정 최저임금액’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법정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근로일수 및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법정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고, 법정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월 비교대상임금’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금액
- 만근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에 불포함
-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어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스스로 탈법행위로 인해 초래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택시운전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사납금이 인상되지 않음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원고일부승)

2020나2048254 퇴직금

심불기각 확정

[제38-3민사부 2021. 11. 2.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위임직 채권추심인인 원고들이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근로자로 인정되는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율 적용 여부(소극)

☐ 판단

- 위임직 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체결 경위, 그 이후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기까지의 과정,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에서 이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자율(연 20%)은 판결 선고일까지 적용하지 않고 상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함 (원고일부승)

2021나2005384 임금

심불기각 확정

[제15민사부 2021. 11. 12.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연봉제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원고들이 연봉제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기존 호봉제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정관의 위임없이 제정된 대학교 내규가 연봉제 시행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후 개정된 교원보수규정이 연봉제 시행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교원보수규정 개정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 교원보수규정의 연봉제 시행 조항의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소극)

□ 판단

-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이 가능하나,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개별적인 임면대상자에 대한 임면 여부나 세부적 계약 조건 기준을 심의하는 기관에 불과하며, 연봉제 임용계약의 도입 여부와 같은 정책적 결정은 그 심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호봉제 내지 연봉제는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불과할 뿐 일정한 인격적 표지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라고 볼 수도 없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규정조항 내지 그에 기한 연봉제 임용계약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거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일부승)

2020나2019942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상고심 계속중

[제1민사부 2021. 12. 8.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대학 병원 부설 연구소 소속 방사선사인 원고가 부설 연구소가 아니라 대학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및 차별처우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대학 병원 부설 연구소 소속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대학 병원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학교법인인지 여부(적극)
- 대학 병원 부설 연구소 소속 방사선사와 대학 병원 소속 정규직 방사선사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정규직 방사선사와의 차별처우(근로기준법 제6조)가 인정될 경우 원고가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으로 구할 수 있는 기준
- 차별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원고는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소 소장 개인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연구소를 하부조직, 기관으로 두고 있는 피고에게 직접 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피고 산하 대학 병원 부설 연구소 소속 방사선사와 피고 산하 대학 병원 소속 정규직 방사선사는 방사선사로서의 핵심적인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의 양이나 난이도, 피고에 대한 기여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대체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함
- 피고는 이 사건 부당해고로 인하여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을 고려할 때 여기서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있는 정규직 방사선사 급여를 기준으로 한 금액임
- 원고가 피고의 차별 처우 불법행위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일부승)

2020나2011962, 2020나2011979(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심불기각 확정

[제1민사부 2021. 12. 8.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피고로부터 자동차 연구·개발 시설의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A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과거에는 재하청업체 소속이었음)이 파견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해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피고와 A회사 사이에 체결한 시설관리위탁계약에 기해 A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피고로서는 피고 운영의 자동차 연구·개발 시설에 관하여 피고의 사업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일반적인 시설관리업무는 전문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고, A회사 및 재하청업체들은 시설관리 전문업체임
- 피고는 시설관리위탁계약에서 시설관리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정하였는데, 이는 시설관리의 품질 보장과 도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내용이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내용이며, 원고들이 이러한 계약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의 표지로 볼 것은 아님
- 원고들이 시설관리위탁계약에서 정한 대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2020나2021662 임금

심불기각 확정

[제1민사부 2021. 12. 8.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공단인 피고의 1, 2급 직원들인 원고들이 피고가 정한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그로 인해 감액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1, 2급 직원들에 대하여 3급 이하 직원들보다 임금인상률을 낮게 결정한 것의 무효를 주장하며 같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했을 때의 임금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1, 2급 직원들에 대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 피고가 결정한 임금인상률이 1, 2급 직원들과 3급 이하의 직원들 사이에 차이를 두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 판단

- 1, 2급 직원인 원고들은 피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으나, 3급 이하 직원들도 장차 1, 2급으로 승급가능성이 있고, 임금피크제는 3급 이하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하므로 이들은 모두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고 그 전체 근로자 집단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에 관한 동의주체가 됨
-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는 노사합의라는 단체협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별도로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라는 형식을 갖추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님
- 이 사건 임금인상률 결정은 절차 및 내용면에서 적법한 임금피크제 시행과 연계되어 이루어졌고,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한 직원과 기존 2급 직원 사이에 일시적으로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러한 일시적인 임금역전 현상으로 인해 피고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2019나2046214 임금

확정

[제15민사부 2021. 12. 10.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실버타운의 시설관리업무를 도급받은 회사(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원고)들이, 4교대 순서로 근무할 당시 당직근무시간의 근로 내용이 단순히 숙·일직 근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이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 수령한 당직근무수당 이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특잔업수당 및 그에 따라 추가되는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라 그 업무 내용이 본래 업무의 연장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초과근무에 포함되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판단기준

□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직근무일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는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① 당직근무 시 수행하는 계기판 확인, 애프터서비스 요청 처리, 기계실과 전기실 순찰 및 점검 업무는 주간근무시간에도 처리되는 업무임
 - ② 사우나실 역세(逆洗) 및 린스 업무와 전등 점검 및 교체 업무가 야간에 이루어지나, 주간 수행 업무와 비교하여 그 내용과 질이 다르지 않음
 - ③ 당직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의 강도가 주간의 것에 비해 크게 약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평일은 4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은 5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그 나머지를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함
 - ① 기계 노후화 등에 따른 오작동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알람에 대응하지는 않음
 - ② 당직근무 중 보고를 2회씩 하는 등 야간근무시간 전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 소속 특근자가 22:00 퇴근한 후에는 당직근무자들의 근무를 주시하는 사람이 없었음
 - ③ 당직근무 중 심야시간대에 교대로 최소 1명은 근무하였으나, 그 이외의 인원은 번갈아가며 수면을 취한 것으로 보임 (원고일부승)

2021나2005285(본소), 2021나2005292(반소) 임금(본소), 부당이득(반소)

[제15민사부 2021. 12. 10. 선고] <노동>

심불기각 확정

□ 사안 개요

원고들은 생명보험회사의 지원실장으로 일하는 사람들로서, 정규적인 지점장 또는 육성실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지급을 구함

□ 쟁점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업무상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① 피고가 자체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관계법령상 교육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
 - ② ‘2회 연속 4급 판정자’의 경우 해임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은 모두 원고들이 교육을 담당한 신인 보험설계사의 실적 달성률 등 성과와 관련된 것임
 - ③ 교육에 미입과한 지원실장도 존재하고 평가등급에서 교육 불참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피고의 정규적인 지점장이나 육성실장의 업무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동일한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① 정규직 지점장은 신인 보험설계사 교육업무 이외에도 계약 및 민원관리, 지점관리 등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지원실장은 직접 또는 자신의 교육생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유지관리 업무를 처리할 뿐 다른 사항에 대한 역할이나 책임을 지지 않음
 - ② 원고들은 정규직 육성실장과 달리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고, 결재권한 등 지점장을 대신하는 권한도 없었으며, 교육생 보고 이외에 따로 근태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음
- 수수료 지급방식
 - ① 지원실장 수수료는 강의시간 등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교육대상자인 보험설계사들의 업무 성과에 기반한 것임
 - ② 교육생의 영업실적에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원실장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항소기각(원고패)]

2020나2047060 취업규칙 무효확인

심불기각 확정

[제15민사부 2022. 1. 14.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사립대학 교수인 원고가 학교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인 교원인사규정을 불이익하게 개정하였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사건

□ 쟁점

- 사립대학 교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및 이 사건 교원인사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적극)
- 이 사건 개정조항으로의 변경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인지 여부(적극)
-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은 고용계약이고 원고는 근로자임. 이 사건 교원인사규정이 피고 소속 교원들의 승진, 징계 및 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업규칙에 해당함
- 일부 연구업적 점수 등 기준이 강화되었고 기준 미충족시 기존 승급유예에다가 직급수당 감액이라는 제재도 추가된 점에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
- 워크숍은 피고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가 아니었고 실질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교원들의 연구실적 향상은 피고의 존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하고(목적의 정당성), 주기평가 트랙을 다양화하여 평가기준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으며(수단의 적절성), 일부 연구업적 및 필수연구업적 기준이 완화되었고, 트랙 선택에 따라 근로시간이 감소할 수도 있으며(유리한 요소 존재), 변경된 요건 충족 사례도 존재하고(내용의 상당성),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변경 절차에 상당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고 본 사례 (원고패)

2017나8816, 2017나8823(병합), 2017나8830(병합)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제1민사부 2022. 1. 26. 선고] <노동>

상고심 계속중

□ 사안 개요

갑 회사가 생산하는 전자제품의 수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전자제품 수리업무를 도급받은 협력업체들의 직원이자 수리기사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청구,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미지급 임금 청구 등을 한 사건 [민사사건 1심(당해사건 1심)과 관련 형사사건 2심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였고, 관련 형사사건 1심은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했던 사안임]

□ 쟁점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업무계약이 실질에 있어 도급계약이 아니라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업무계약은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① 피고는 갑 회사가 서비스사업부를 분사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갑 회사가 생산한 전자제품의 수리, 유지보수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이는 협력업체와 피고 사이의 서비스업무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동일한 것으로서 협력업체의 갑 회사 제품 수리 업무는 피고의 사업 목적 그 자체에 해당함
- ②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에 포함되는 2010년경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85.8%를 수리업무로 달성하였고, 협력업체들은 그 수리 물량의 98%가량을 처리함
- ③ 협력업체 수리기사의 업무수행은 피고뿐만 아니라 갑 회사의 이미지 및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협력업체 수리기사의 업무수행 결과뿐 아니라 수행 방법, 수행 태도 등 구체적인 수행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하였음
- ④ 협력업체들은 피고와의 서비스업무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⑤ 피고는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게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업무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음
- ⑥ 협력업체에 수리기사의 선발, 교육, 근태관리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일부승)

2020나2008508, 2008515(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근로자지위확인등(병합)

[제15민사부 2022. 1. 28. 선고] <노동>

상고심 계속중

□ 사안 개요

피고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과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의 요건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두 가지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가 들고 있는 판단 요소 중 ① 상당한 지휘·명령, ②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이라는 요소는 근로자파견을 인정함에 있어 핵심적인 지표인 반면, ③ 원고용주의 작업배치권, 인사권 등, ④ 계약 목적 범위 한정 및 전문성, 기술성 유무,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등 요소는 부차적·보완적인 고려요소로 봄이 타당함
- 근로관계의 실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장별·공정별·협력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별로 다를 수 있음. 따라서 각 원고별 계쟁기간 또는 계쟁시기의 담당 업무와 근무상황·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직접생산공정(도장) 외에 간접생산공정(서열·불출), 보전업무, 수출선적업무(출고업무) 관련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서열·불출 업무 관련) 도급계약의 목적 자체가 변동되는 사양에 맞춰 해당 부품을 적시에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두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차량의 사양과 서열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음
-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해당 근로자가 원청 회사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원청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함. 각기 수행하는 업무가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다거나 공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시적인 상호 작용 하에 이를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원고일부승)

2021나2021980 임금 및 퇴직금

심불기각 확정

[제15민사부 2022. 1. 28.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원고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취업규칙에는 법규범적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취업규칙으로써 근로조건에 변경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임금피크제로 시행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구한 사안

□ 쟁점

- 취업규칙에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다음과 같은 논거로 취업규칙의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되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이로써 근로관계를 규율한다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적용에 개별적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한다면 굳이 불필요한 규정인 점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되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경되는 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한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최저기준의 설정에 관한 취업규칙의 법규범적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 집단적 동의제도는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는 의미를 가지나, 한편 사용자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 근로자측의 권한을 의미하기도 하며 집단적 동의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집단 사이에 집단적 대등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이 관철되는 면에서 법규정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점 [항소기각(원고패)]

2021나2025234 임금

확정

[제1민사부 2022. 4. 6.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근로자들이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간정산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의 차액 지급을 구한 사안

□ 쟁점

-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시 부담금의 정산 방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시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 판단

-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한 퇴직급여법 제10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부담금 납입 기일이 아닌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함
- 근로자가 재직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면서 종전 재직기간도 소급하여 가입한 경우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지만, 동일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이 소급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평균임금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함이 타당함
-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가입하면서 가입기간을 소급할 때 사용자가 소급 가입 기간에 대하여 일시금의 형태로 납입하는 부담금은 중간정산퇴직금이 아니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부담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자의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그 소멸시효는 중간정산퇴직금과 달리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함 (원고일부승)

2021나2026961 해고무효확인

확정

[제15민사부 2022. 4. 15.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등기된 사내이사(부사장)인 원고가 주식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절차 및 실체 모두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거나 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등기임원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고사유 통지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 사건 해고사유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판단

-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약 4년 6개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일로부터 약 4년 4개월 경과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사유로 기재된 ‘배임’에 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거나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대판 2002다24681 등),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경영에 관여한 회사들에서 약 18년간 사원·대리·과장·실장으로 재직하다가 피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점, 거의 매일 피고의 대표이사(주로 해외 거주)에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의 근태상황과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한 점, 피고의 대표이사 가족에 관한 사적인 업무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단지 “회사품위 손상 및 배임, 기타”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고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해고에 앞서 원고를 상대로 사실확인을 하거나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함 [향소기각(원고승)]

2021나2025715 임금 등 청구의 소

확정

[제38-2민사부 2022. 5. 17.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원고들은 공기업 근로자 또는 퇴직자로서, 정기상여금 등의 각종 수당과 현장체재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피고회사 임금규정에 따른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됨
 - ① 피고의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임금의 지급기준,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②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취업규정과 보수규정 등에 의하면, 정기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고, 원칙적으로 보수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임
 - ③ 정기상여금의 각 분기별 지급이 명절 등의 시점에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시점에 특별한 목적의 필요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을 띠는 금품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정기상여금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과 고정성이 없게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 ① 피고 사장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정기상여금의 지급 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라고 명시하여 공지하고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들에게만 이를 지급하여 왔음. 피고는 이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을 들어 정기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주장함
 - ② 피고의 임금규정은 정기상여금의 지급율과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대상을 구체적,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만을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사장이 정기상여금의 지급 대상에 재직조건을 부가하여 공지하고 그에 따라 지급되어 왔으며 여기에 노동조합이나 개별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취업규칙이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의 묵시적인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러한 임금지급에 관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원고일부승)

2020나2035784 손해배상(기)

상고심 계속중

[제1민사부 2022. 6. 15.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피고5(회사)가 직원인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원고는, ① 위 해고가 자신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② 피고5와 나머지 피고들(피고5 또는 소속 그룹의 임원들)이 위 해고 전에 원고를 ‘문제인력’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일상생활 감시, 장기 해외파견 등 일련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구한 사안

□ 쟁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소극)
- 피고들이 원고를 ‘문제인력’으로 지정하고 감시하였는지 여부 및 그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5에 대하여만 적극)

□ 판단

- 원고가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선행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음)
- 피고5는 2002년경부터 2012. 6.경까지 원고의 노동조합 관련 활동 등을 이유로 원고를 ‘문제인력’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원고의 동향, 면담 결과, 고립화 방안, 원고가 민주노총 인사들과 통화한 내용 등이 기재된 문건을 작성 또는 보고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5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조직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의 정보를 단발적으로 취합·관리한 것을 넘어, 노동조합 업무에 관한 정당한 행위를 방해·저지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원고의 동향 등 정보를 취합·관리·보고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함(나머지 피고들이 위 불법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 (원고일부승)

2021나2038797 임금

확정

[제15민사부 2022. 5. 11.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지자체 또는 그 수탁단체가 운영하는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방문교육지도사가 위 각 지자체나 지원센터 등을 상대로 포괄임금제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일부 피고들인 수탁단체도 임금지급의무 주체인지 여부(적극)
-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 여부(소극)
-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일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이 사건 보수교육시간이 초과근로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지원센터는 영조물에 불과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로 볼 수 없고, 수탁단체들이 지원센터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점 등에 비추어, 수탁단체도 임금지급의무의 주체에 해당함
- 근로계약상 각 가정당 주 2회, 회당 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지원센터는 방문교육 전후로 각각 활동계획서와 활동일지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는바,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방문가정 수에 가정당 교육시간을 곱하는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임
-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일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이나 ‘1개월의 개근에 상응하는 근로 제공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최초 계획과 달리 수업시간 일부가 변경되었다고 하는 이미 확정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 근로 시점이 사후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소정근로일수가 정해져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인정되어야 함
- 이 사건 보수교육은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원고들의 보수교육 미이수 시 중대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에 보수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수교육시간은 초과근로수당 지급의 대상에 해당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2021나2036036 해고무효확인 등

상고기간 중

[제1민사부 2022. 8. 24.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주식회사인 피고가 그 소속 직원인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는데, 원고는, ① 피고의 재심징계위원회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인 ‘노동조합 대표의 참석 및 소명’을 허용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② 피고가 징계사유로 든 사정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해고는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주장하며, 징계해고의 무효확인 및 그 기간의 미지급 임금을 구한 사안

□ 쟁점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일부 적극) 및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적극)

□ 판단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룸. 피고의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 시 노동조합 대표의 징계위원회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 대표가 조합원인 원고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어 무효임.
- 피고가 원고의 여러 법인카드 결제건 등을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그 중 일부만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징계사유로 인정한 후, 인정되는 법인카드 부당사용의 액수, 횟수 및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이어서 실체적으로도 무효라고 본 사안 (원고일부승)

2020나2034989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상고기각 확정

[제18민사부 2021. 9. 3.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감시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주주대표소송)

☐ 판단

- 이사의 감시의무의 대상은 다른 이사가 직접 집행하는 업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집행 전반, 나아가 피용자가 집행하는 업무도 포함한다고 판시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인 피고들이 임직원의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배려할 의무를 전혀 행하지 않은 것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 (원고일부승)

2020나2015834 주권인도

심불기각 확정

[제14-2민사부 2021. 9. 9.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위 선택권을 행사한 사건

☐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및 정관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여계약의 효력을 착오에 의한 취소 등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성과보상이므로, 이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는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정에 관한 고려 대상으로서 동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하위직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여 해고 처분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동’을 한 임원에 대하여 해당 임원의 착오 유발로 이를 알지 못했던 회사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부여계약 일부 취소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원고일부승)

2020나2036343 손해배상(기)

상고심 계속중

[제14-3민사부 2021. 10. 14.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주주인 원고가 상법 제398조가 요구하는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한 대표이사 피고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으로서 상법 제399조에 따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2011. 4. 14. 개정되면서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상법 제398조가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은 배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 판단

2011. 4. 14. 개정 전 구 상법 제398조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라고만 규정하고 있었고, 대법원(2005다4284 판결)은 위 승인에 사후 승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음. 그러나 개정 후 현행 상법 제398조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후 승인이나 추인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직계비속에게 회사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표이사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함 (원고일부승)

2020나2049059 상환금 청구의 소

상고심 계속중

[제16민사부 2021. 10. 28.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특약을 위반하여 신주를 발행하였음을 이유로,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투자금의 조기상환과 위약벌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 쟁점

신주인수계약에서 주식인수인에게 향후 신주발행에 대한 사전동의권과 위반시 투자금 조기상환 및 위약벌청구권을 정한 특약의 효력

☐ 판단

신주인수로 주주 지위만을 갖게 된 원고에 대하여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여 회사의 경영에 강력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위반 시에는 배당가능이익의 존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출자금의 배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하여 투자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원고패)

2021나2016551 주식명의개서

확정

[제18민사부 2021. 11. 26.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피고의 주주 A로부터 피고 발행주식 일부인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제1심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주주명부 기준 A보유 주식을 무상 소각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짐. 이에 대한 원고의 즉시 항고에 따라, 항고법원이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였음이 밝혀지면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다’는 권리보호조항을 추가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결정을 함
- 이에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였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함

□ 쟁점

과거 시점에 주주였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주 지위를 부인당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를 다투어 왔음
 - ② 회생계획에 원고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이 추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과거의 법률관계더라도 주주 지위에 대하여 기판력 있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후속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③ 원고가 주주였는지 여부는 회생계획의 권리보호조항에 따른 금전지급 청구의 선결문제가 되어 심리·판단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확인의 이익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함[별도 소송으로 금전지급 청구를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부합하지 않고,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청구기초의 동일성 여부가 불분명함]
 - ④ 이 사건에서는 이미 본안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법원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를 심리하여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고 법원의 본안판결에 따른 부담을 절감해야 할 실익은 거의 없음. 오히려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할 경우 법적 분쟁을 최종적이고 통일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법절차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반함(원고승)

2021나2028295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심불기각 확정

[제14-2민사부 2021. 12. 23.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피고로부터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주확인을 구한 사건

☐ 쟁점

피고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소송에서 원고(수익자)와 피고(채무자) 사이의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도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주주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에는 상대적 효력만이 있어 피고(채무자)의 원고(수익자)에 대한 주식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피고(채무자)와 원고(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이 되더라도 피고의 채권자와 원고(수익자)의 관계에서 피고(채무자)의 재산으로 취급될 뿐, 피고(채무자)가 직접 주식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는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였고 그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취소의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를 상대로 주주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다만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승계참가인승)

2021나2010522 주식인도 등 청구의 소

확정

[제12-2민사부 2022. 1. 12.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원고1과 A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정에 따라, 원고1은 A의 주주였던 피고로부터 A주식을 매수하고 피고는 원고1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1 주식을 취득함. 이후 위 협정의 종료 및 원상회복 합의에 따라, 원고1과 피고 사이에서 최초 취득한 위 각 주식을 다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 사건 주식교환 합의’)가 체결됨
- 피고가 이 사건 주식교환 합의 해지를 통고한 후 원고1 주식을 전부 타에 매도하고 원고1로부터 받은 A주식을 원고1에 반환하자, 원고1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약벌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이 사건 주식교환 합의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판단

-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그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음
 - 이 사건 주식교환 합의에 따른 원고1 주식의 취득은 상법 제341조의2 제2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또는 그 해석상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음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
- ① 원고1은 A와 사이에 전략적 제휴협정 및 원상회복 합의를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협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없고, 그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음. 상법 제341조의2 제2호에 따른 자기주식취득 허용 요건사실로서 상대방인 피고가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움
 - ②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고, 원고1이 이 사건 주식교환 합의를 체결한 것은 기존 주주들이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1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었음이 인정됨.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교환 합의상 권리·의무를 원고2에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는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2021나2020918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심불기각 확정

[제18민사부 2022. 1. 14.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A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회생채권을 신고하였고, 관리인인 피고가 이의함.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자, 원고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1심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소송수계 없이 소송절차가 중단됨. 이후 A회사에 대한 2차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다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됨

□ 쟁점

-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서 말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에 선행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어 진행 중인 이의의 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계속 중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처리방법
- 선행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폐지되었음에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소송수계가 없었던 경우, 후행 회생절차에서 동일한 관리인만이 이의하였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소송수계신청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 판단

-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의한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이는 채무자에 대하여 선행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다시 후행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해야 하고, 그 소송수계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함
-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며 이때의 수계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음
- 관리인이 피고로 표시되어 있었고 후행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가 관리인 외에는 없었다는 우연한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의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른 소송절차 수계신청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음 [항소기각(소각하)]

2021나2019338 약정금

심불기각 확정

[제14-3민사부 2022. 3. 3.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피고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신탁재산인 甲사 주식의 수탁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甲사의 법인세 등을 납부하게 되자 담보신탁계약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법인세 등 상당의 약정금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원고의 법인세 등 상당의 약정금 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소극) 아니면 ‘개시후기타채권’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려면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야 하는데(대법원 2011다84335 판결 등), 담보신탁계약의 체결만으로는 약정금 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만 성립할 뿐이고, 회생절차개시 후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주요한 발생원인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제6호(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제15호(그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甲사 주식은 원고가 수탁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채무자인 피고의 업무 및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이므로 사무관리, 부당이득 관련 청구권도 아니며, 원고가 납세자인 이상 채무자인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의 ‘개시후기타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원고승)

2021나2030519 위약벌청구의 소

상고심 계속중

[제16민사부 2022. 3. 31.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피고회사가 원고(증권사)로부터 자금 차용 과정에서 10% 이자 약정 외에도, 대출취급수수료 1억 원, 금융자문계약 수수료 1억 원, 피고회사의 실질 사주인 피고1로부터 시행사 주식 20% 또는 80억 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약 2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을 약정함
- 원고가 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자, 피고들이 대부업법상의 이자제한 24%를 초과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약벌 80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원고는 주식예약완결권 취득은 메자닌 금융기법(mezzanine capital)에 따른 투자의 대가이므로 대부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다툼

□ 쟁점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 판단

-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은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그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 청구도 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
- ① 대부업법이 여신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의 수령을 금지하면서 이자로 간주하는 것에는 사례금이나 수수료 등 이자가 아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됨은 물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각종 경제적 이익’도 포함되고, 금전대차와 관련한 대가라면 그 제공 명의자가 차주가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 ② 대출취급수수료는 대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대부업법상 이자로 간주되고, 금융자문수수료도 금융자문에 대한 대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금융자문이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대출 대가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대부업법상 이자로 간주됨. 주식매매예약완결권도 대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이자로 간주되며, 그것은 차주인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1 개인이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임
- ③ 원고가 수령한 이자, 대출취급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만으로도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은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무효임 (원고패)

2021나2040776 주식매매대금청구

심불기각 확정

[제14-2민사부 2022. 5. 12.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도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주식매매대금을 구하였는데, 그 후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주식 50%가 소각되자 주식매매대금도 50%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피고가 다툰 사건

□ 쟁점

- 주권 발행 전 주식에 대하여 계약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곧바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주식양도에 관한 양수인의 수령지체 중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이 소각된 경우, 소각된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인이 주식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써 채권계약인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대법원 2010다94953 판결 등),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주식양도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준물권행위로서의 주식양도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7다270916 판결 등), 주식양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함
-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피고가 수령지체에 빠졌고, 그로 인하여 채권계약으로서의 주식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으로 특정된 이상, 그 후 회생계획에 따라 소각된 이 사건 주식 50%는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양도가 이행불능이 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소각된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원고승)

2021나2028370 손해배상(기)

확정

[제18민사부 2022. 6. 10.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은 피고(증권사)와 ‘○○ Volatility Focused 5238 Index’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 사모 파생결합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입함. 피고가 운용 중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하였고, 계약 해지에 따라 중도상환액을 지급함. 두 기금을 합병하여 설립된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자본시장법 위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쟁점

-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인지(적극)
- 피고의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적합성의 원칙 위반 여부(적극), 제47조 설명의무 내지 제4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 위반 여부(적극)

□ 판단

-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고, 자본시장법령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원고가 일반투자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투자권유를 함으로써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함. 이 사건 DLS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고, 오롯이 피고의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임. 원고가 ELB, ELS 등에 투자한 경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합한 상품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DLS와 다른 파생결합증권과의 차이 등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또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오인할 소지 있는 내용을 알림으로써, 설명의무 내지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함. 금융상품의 명칭이 거래계에서 통용되는 것임에도 그 구조가 다르다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금융상품들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DLS는 피고의 투자실적과 연동되는 대신VF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파생결합증권으로 보기 어렵고, 일종의 투자일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원고일부승)

2021나2000754 손해배상(기)

상고심 계속중

[제16민사부 2022. 7. 21.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중국의 에너지기업 CERCG가 자회사인 CERCG캐피탈(버진아일랜드 설립) 발행의 거액의 해외보증사채를 보증함. 국내 특수목적법인이 위 해외보증사채를 매수하고 원금 1,635억 원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 사건 ABCP’)을 발행하였고, 피고가 설정한 펀드(‘이 사건 펀드’)가 이 사건 ABCP를 50억 원어치 매수함
- 이후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 부도로 인해 이 사건 ABCP가 부도 처리되자, 펀드 투자자들인 원고들이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교차부도 가능성에 관한 기망 여부(소극)
- 이 사건 ABCP 편입 및 펀드 운용과정에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적극)

□ 판단

- 집합투자회사로서는 제3자가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여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집합투자신탁의 운용 취지에의 부합 여부, 대상 재산의 위험성과 수익성 등 투자대상재산의 취득·운용·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도 충분하게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그러한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올바르게 충실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 역시 알려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함
- 피고는 ① 집합투자재산 중의 하나로 이 사건 ABCP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만 기초하여 펀드의 취지에 맞지 않은 위험성 높은 자산에 신중하지 못하게 거액을 투자하였고, ② 그 운용과정에서도 위험성 변동에 관한 상황 파악과 조사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CERCG의 부도로 인해 이 사건 ABCP의 신용위험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해외 금융정보 제공업체나 국내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펀드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제 때 알리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원고일부승)

2020나2010686 정정보도등 청구의 소

상고심 계속중

[제8민사부 2021. 8. 19. 선고] <언론>

☐ 사안 개요

전 중수부장인 원고가 ‘원고가 노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사건 보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피고의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및 위
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암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의 판단 기준
-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
- 위법성 조각 여부

☐ 판단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암시하거나 적시하는 방법으
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 사실에 관한 시간과 장소가 언론보도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의 허위 여부는 피고가 그러한 사실
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원고가 그 신빙성을 탄핵하
는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
므로 허위성도 증명되었으며,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일부 인용함 (원고일부승)

2021나2013958 청구이의

심불기각 확정

[제13민사부 2021. 9. 10. 선고] <언론>

□ 사안 개요

정정보도의무 이행판결과 아울러 위 의무이행 불이행에 대비하여 명한 간접강제결정이 확정된 후, 위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로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건

□ 쟁점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 정정보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이 채권자가 그 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한도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에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이 경우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 2016다268695 판결 참조). 그러나 대상 사건의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는 그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확정적이어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도 위 조건의 성취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
- 간접강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다른 별개의 제도이고, 간접강제 배상금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간접강제 배상금의 본질을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법원은 간접강제 대상이 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의 성질,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 이행의 난이, 불이행의 계속으로 채무자가 얻는 이익, 불이행의 사회적 영향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간접강제를 명하고 그 배상금을 정하는 점, 강제집행 단계에 이르러 간접강제 배상금을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 한도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간접강제의 취지에 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집행단계에서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이 채권자가 입은 손해의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2021나2008512 손해배상(기)

확정

[제8민사부 2021. 11. 25. 선고] <언론>

□ 사안 개요

아귀점 식당에서 상한 아귀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했다는 보도를 한 방송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허위 보도인지(적극)
- ‘본점에서 상한 아귀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했고, 체인점에도 상한 아귀가 일부 납품되었다’는 보도 내용이 ‘체인점에서도 상한 아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지(소극)

□ 판단

- 아귀점 식당에서 과거 상한 아귀를 사용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상한 아귀가 사용된 기간과 빈도, 사용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도 “그동안 상한 아귀를 섞어 팔았다”라고 보도한 경우,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과거 일정 시점부터 보도 무렵까지 지속적·반복적으로 상한 아귀를 사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단순히 지엽적인 부분에 다소의 과장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문제된 보도에서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함. 그런데 이 사건 보도는 체인점에서 상한 아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보도 전반부에서 상한 아귀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한 본점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다음 상한 아귀가 체인점에도 일부 납품되었다고 보도함으로써 보도 내용 자체로 전반부에 보도된 음식점은 체인점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후반부에 ‘본점에서 공급된 아귀를 쓰지 않았다’는 체인점 운영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보도내용을 통해서 ‘체인점에서 상한 아귀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한다’는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함 (원고일부승)

2021나2014883 정정보도

심불기각 확정

[제13민사부 2022. 4. 8. 선고] <언론>

□ 사안 개요

원고가 피고 발행의 인터넷신문과 주간지에 허위사실들이 적시된 기사가 작성·보도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함)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위 같은 기사 중 정정보도를 구하는 허위사실 및 그에 대한 정정보도 부분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사건

□ 쟁점

- 어떤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척기간 내에 제기한 경우,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같은 기사의 내용으로서 정정보도를 구하는 사실적 주장을 추가하였더라도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 판단

- 언론보도 자체와 언론보도의 내용을 구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의 규정과 단일한 기사의 내용으로서 다수의 사실적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사실적 주장들은 그 기사의 보도로써 동시에 공표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 또는 그 언론보도가 있는 날이라고 보아, 피해자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언론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언론보도의 내용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그 언론보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함(쟁점에 관한 판단)
- 사실적 주장에 대한 정정보도 추가의 청구변경 전후 정정보도의 대상인 언론보도의 내용은 모두 단일한 기사의 일부 내용으로서 위 기사의 내용에 관한 분쟁이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변경으로 소송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적법하다는 전제 아래 정정보도청구 중 일부를 인용함 (원고일부승)

2021나2040158 정정보도

심불기각 확정

[제13민사부 2022. 4. 22. 선고] <언론>

□ 사안 개요

‘신○○의 뿌리는 박○○의 전도관으로 올라간다. 이○○(신○○ 총회장)는 신앙촌에서 10년간 신앙생활을 하다가’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전도관’으로도 불리는 종교단체인 원고가 언론중재 및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으로 약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예비적으로 반론보도청구)를 한 사건

□ 쟁점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의 요건인 ‘정정/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원고와 관련하여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 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제1심판결론이 정당함
-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라고 특정한 “신○○의 폐쇄적인 신도 관리 방식 및 사기적인 전도수법은 천부교에서 비롯되었고 천부교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은 이 사건 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기사가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2020나2022269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상고기간 중

[제13민사부 2022. 8. 19. 선고] <언론>

□ 사안 개요

지상파 방송사인 원고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로 ① ‘원고는 손○○ 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② ‘원고는 손○○가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방송사가 특정 내용을 보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 인정 여부 및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 언론사가 피해자인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의 인정 요건

□ 판단

- 동승자 보도를 다룬 부분의 경우는, 방송 내용의 흐름이나 비중, 표현 전체의 취지를 보면 이 사건 보도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접하는 일반 독자에게, “원고가 손○○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하였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최소한 간접적, 우회적인 방법으로 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보도의 목적이 일정한 사실관계의 확정에 있지 않음을 보도 내용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등의 사정에 의하면, 위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함. 그러나 도주 보도 부분은 암시에 의해서나마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3다52142 판결),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11다40373 판결). 피고가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보도의 취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원고 보도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원고일부승)

2020나2022696 손해배상(의)

확정

[제9민사부 2021. 10. 28. 선고] <의료>

□ 사안 개요

병원 의료진이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식증(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 진단 환자에게 그 원인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비장조직에 초음파내시경 유도 하 세침흡인술(Endoscopic Ultrasound Guided Fine Needle Aspiration,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후 환자에게 위(胃) 또는 비장에서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시술 전 준비단계에서의 과실 여부(소극)
-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 여부(소극)
- 경과관찰상의 과실 여부(적극) [활력징후 측정이나 CT 검사 등을 소홀히 한 과실]
- 출혈에 대한 조치상의 과실 여부(적극) [대량출혈 발생시 적극적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원고일부승)

2021나2007717 손해배상(의)

확정

[제9민사부 2021. 11. 18. 선고] <의료>

□ 사안 개요

자궁내막암 3기로 자궁적출술을 받은 망인이 혈관형성이상 병변에서 발생한 다량의 상부 위장관출혈로 사망에 이르자,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 병원을 상대로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상부 위장관 출혈에 대한 배제검사 등을 못한 불완전이행책임 주장의 당부(소극) [진료채무 불완전이행은 해당 진료가 그 당시의 의학적 지식이나 기술에 있어서 평균수준 미달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임을 뜻함.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위장관 출혈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한 것이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서 볼 때 진료계약상 채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망인의 쇼크 발생 등에 대한 응급처치 지체책임 주장의 당부(소극)
- 설명의무 등 위반 주장의 당부(소극) [항소기각(원고패)]

2019나2053700(본소), 2021나2021065(반소) 손해배상(의)(본소), 병실퇴거 등
청구(반소) 심불기각 확정

[제17-1민사부 2021. 12. 2. 선고] <의료>

□ 사안 개요

기관지 튜브 삽입 상태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튜브 발관 후 기도폐쇄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자, 환자와 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병원 측이 환자 등을 상대로 입원진료계약 해지에 따른 병실퇴거, 간병비 등 부당이득반환 및 진료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병원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의 가족도 병원 측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된 경우, 병원 측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적극)
-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 있으나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입원치료가 계속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병원 측이 퇴원을 구할 수 있는지[입원진료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적극) (원고일부승)

2021나2013354(본소), 2021나2013361(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심불기각 확정

[제17-1민사부 2022. 1. 20. 선고] <의료>

□ 사안 개요

원고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노년성 백내장’ 치료를 위하여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의료비를 청구하자,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은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시력교정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이 사건 수술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시력교정술’에 해당하는지(소극)
-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당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인지(소극)

□ 판단

- 이 사건 수술이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 ① 백내장 치료를 위한 수술은 인공수정체 사용이 필수적인데, 그 종류(단초점, 다초점)에 따라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이상 시력교정 효과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② 이 사건 보험약관은 2016. 1. 1.부터 시행된 표준약관과는 달리 부보대상에서 이 사건 수술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있지 않음
-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당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① 판례상 입원은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이고, 이 사건 보험약관상 ‘입원’에 해당하는지도 위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② 이 사건 수술은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음
 - ③ 피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상 진료시간은 2시간 남짓에 불과하고, 피고에게 발생한 부작용·합병증 등 문제, 구체적인 처치·관리 내용, 입·퇴원시간 등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음 (원고일부승)

2021나2020680 중재판정취소

확정

[제33민사부 2022. 2. 17. 선고] <중재>

□ 사안 개요

- 피고 갑(운송인)은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을에게 운송계약상 지위를 양도하였는데, 피고 갑과 을 중 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함
- 피고 을은 원고에게 운송료를 청구하는 제1중재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정산금으로 상계 항변을 하였으나 배척당함(제1중재판정). 원고는 피고 갑에게 이 사건 정산금을 청구하는 제2중재신청을 하였으나 상법 제 840조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됨(제2중재판정)

□ 쟁점

- 중재절차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묵시적 합의를 하여, 중재합의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취소 사유 인정 여부(제2중재판정)
-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 중재법을 따르지 아니한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취소 사유 인정 여부(제1, 2중재판정)
-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할 사안을 각하하지 않고, 본안심리할 사안을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취소 사유 인정 여부(제1, 2중재판정)

□ 판단

- 이 사건 정산금 청구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중재합의대상인 운송계약에 관한 분쟁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에 제척기간 도과를 문제삼지 않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며, 중재판정부는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여 소송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제1, 2중재판정에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 중재법을 따르지 아니한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취소 사유 인정되지 않음
-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란 단순히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중재인의 법적 판단이 법령에 위반되어 중재판정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으로 명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를 뜻하는데, 제1, 2중재판정에 위 사유 인정되지 않음 [항소기각(원고패)]

2021나2022938 조정위원회 결정 무효 확인

확정

[제33민사부 2022. 5. 19. 선고] <중재>

□ 사안 개요

프로축구선수가 구단과 선수계약에 기초한 연봉협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선수계약상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구단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분쟁해결조항의 무효, 조정위원회 구성 위법, 조정위원회 결정내용 위법 등을 주장하며 위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함

□ 쟁점

- 선수계약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의 해석(= 중재조항)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의 성격(=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판정)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
-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피고적격(=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미치는 상대방)

□ 판단

- 선수계약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 문언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선수계약 관련 장래에 발생하는 선수와 구단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불복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축구 관련 단체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며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해당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문언상 ‘조정’과 ‘중재’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중재조항에 해당함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은 중재조항인 위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1순위 중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중재판정으로, 선수와 구단이 모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중재법이 적용됨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만 가능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중재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소이므로 부적법
- 이 사건 소를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중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 [항소기각(소각하)]

2020나2043570 중개인수수료 등 청구의 소

상고기간 중

[제33민사부 2022. 8. 18. 선고] <중재 /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영국 프로축구 구단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던 피고는 2017. 1.경 A회사와 사이에 소속팀과 중개협상 및 상업적 광고계약 대리에 관한 중개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계약기간 중인 2018. 5. 9. 다시 원고와 사이에 중개인계약(‘이 사건 중개인계약’)을 체결함. 이후 피고는 2018. 12. 24. 원고에게 원고의 기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중개인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18. 12. 28. 다시 A회사와 사이에 중개인계약을 체결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중개인계약에 따른 중개인수수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중재합의 위반 항변이 중재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중개인계약상 중재 및 관할 합의의 내용 해석
-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재합의에 따라 영국축구협회 등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사건이나, 피고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였을 뿐 이 사건에 관하여 전속적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항변을 하지 않았고,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위 변론기일 이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에서 최초로 주장하였으며, 위 변론기일에서 한 관할위반의 항변이 중재합의 위반의 항변을 포함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중재합의 위반 항변은 중재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음
- 준거법인 영국 법의 판례, 이 사건 중개인계약 ‘분쟁(DISPUTES)’ 조항의 규정, ‘준거법(GOVERNING LAW)’ 조항의 수정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중개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우선적으로 영국축구협회 등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중재합의를 하면서, 영국축구협회 등이 심리할 관할권이 없는 사항에 한하여 영국 법원 등이 전속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중재절차를 관할(governing)하거나 감독(supervising)하기 위한 재판관할권은 영국 법원 등이 비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중재합의상 중재기관이 심리할 권한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영국 법원 등에 전속적인 재판관할권을 부여하는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이 사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취소 환송)

2020나2038172 손해배상

상고심 계속중

[제4민사부 2021. 9. 9.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제품제작 수급자가 도급자를 상대로 제품제작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도급자와 수급자가 공동으로 기여한 영업비밀의 귀속관계(= 공동 귀속)
- 영업비밀의 공동보유자 중 1인이 다른 보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아님] (원고패)
- 동일 쟁점의 2020나2016653 사건도 같은 날 판결 선고

2019나2016985 손해배상(기)

확정

[제5민사부 2021. 10. 21.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음악저작물의 작곡 또는 작사한 저작권자들인 원고들이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의 허락 없이 원고들의 각 음악저작물(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악곡을 일부 변경하거나 가사를 전부 또는 일부 개사하여 선수들의 응원가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고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성격이 공동저작물인지 여부(소극)
- 저작재산권의 침해와 달리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동저작물적 성격을 인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원고들의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소극) [악곡의 경우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정도의 변경이 없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정도의 창작성이 없음. 가사의 경우 실질적 유사성 없음]
- 작곡가인 원고들의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적극)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작사가인 원고들의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소극) [원래의 가사와 개사된 가사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일부승)

2021나2038902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

심불기각 확정

[제4민사부 2022. 1. 20.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피고가 ‘대성’이라는 명칭에 관한 다수의 상표권을 보유한 원고와 상호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성자산운용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상호사용계약기간 종료 후 ‘티에스대성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자, 원고가 상호사용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티에스대성자산운용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사용금지 등을 청구한 사안

□ 쟁점

피고가 ‘대성’을 단독으로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 ‘대성’이 포함되어거나 대성그룹이 연상되는 유사상호의 사용까지 금지되는지 여부

□ 판단

- 상호사용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 문언의 객관적 해석, ‘대성’이라는 상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원고에게 전용권이 있는지 여부나 원고나 원고 계열사의 영업과 오인·혼동될 여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법리적 견해를 불문하고 계약을 근거로 피고의 장래의 상호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티에스’와 ‘대성’이 명칭과 의미에 있어 분리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상호사용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계열사로 오해될 여지가 없도록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피고의 상호에 ‘대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대성’이라는 단어에 한하여, 피고가 이를 상호의 전체로 사용하는 경우 및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상호 중 일부에 사용하는 경우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티에스대성자산운용 주식회사’라는 상호 중 ‘대성’ 부분의 사용금지를 명함 (원고일부승)

2021나2013675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확정

[제5민사부 2022. 4. 28.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애완동물 소변검사 자가진단 키트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이에 연계되는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원고가 피고들의 애완동물 소변검사 자가진단 키트 제품 및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상품의 생산 등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 쟁점

- 원고 상품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각 타인의 상품,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내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피고들의 상품이 원고 상품과 대비하였을 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 피고들의 상품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원고의 성과물을 부정하게 사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스마트폰을 이용한 반려동물 소변검사 키트 등’ 이 일정한 제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문구 또는 기능적 표현 형태를 넘어 장기간에 걸쳐 원고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제품의 형태 또는 영업활동으로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원고 상품은 피고들 상품과 대비하여 포장의 고양이와 강아지 및 육각형의 도형이 포장에 배치된 위치, 크기와 형상, 제품명, 가로 세로 비율 및 색상이 다르고, 원고 진단키트 제품의 검사스트립, 비색표 및 애플리케이션의 화면은 각 소변검사를 하는 제품 및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이 통상 가질 수 있는 형태로 보임
- 원고가 주장하는 선행 진단키트 제품과의 차별성 있는 부분은 그 내용상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보기 어렵거나, 이미 선행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었거나, 통상의 유사한 제품이 가질 수 있는 형태이거나, 원고만이 독점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설령 해당하더라도 피고들이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피고들 상품을 개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2021나2032690 손해배상(지)

상고심 계속중

[제4민사부 2022. 4. 28.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피고가 제작·판매한 가방이 원고 가방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 쟁점

- 가방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
- 원고 가방이 선행 가방들에 개시된 요소들을 결합한 형태인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의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여 상품 형태로 보호받을 수 없는지 여부

□ 판단

- 원고 가방과 피고 가방은 가방의 길이, 높이, 너비를 비롯하여 가방의 형상을 구성하는 조임끈, 조임끈을 관통시키는 구멍, 가죽편, 측면 어깨끈 연결 형상 등이 모두 동일하여 조임끈을 조일 때나 조이지 않을 때나 앞면, 옆면, 뒷면이 형상이 같음. 내부 수납공간이 피고 가방에 존재하지 않고, 소재와 색상이 다른 것은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변형이고 전체적인 상품 형태에 변형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밖의 차이점은 변경의 정도가 미미하여 상품 형태에 별다른 차이 효과를 일으키지 않음 (객관적 형태 모방). 피고 가방이 원고 가방의 형태에 의거한 것도 인정됨 (주관적 모방의사).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는 상품 전체의 형태로서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해하여 보면 혼한 형태라 하더라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그 구성 형태가 아주 단순하고 그 결합 또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별다른 형태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 볼 것은 아님
- 원고 가방의 형태가 비록 동종 제품의 구성 형태를 조합한 것일지라도 동종 상품이 흔히 가지는 물개성적 형태라고 볼 수 없고, 타인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품 형태라고 인정한 사례 (원고일부승)

2021나2046460 기타(금전)

[제4민사부 2022. 6. 9. 선고] <지식재산>

확정

☐ 사안 개요

원고가 피고와 영화제작을 위한 감독계약을 체결하고 영화를 촬영하던 중, 피고가 원고와의 감독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영화감독으로 하여금 나머지 연출 및 촬영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영화(원고 촬영 영상이 사용된 부분은 상영시간의 40% 정도)를 완성한 사안으로, 원고가 저작권법상 공동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공동실연자)로서 성명표시권 등을 주장하며 원고를 이 사건 영화의 영화감독으로 표시할 것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실연자인지 여부

☐ 판단

- 원고와 이 사건 영화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후행 감독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화를 원고와 후행 감독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고(이 사건 영화는 원고 촬영 영상에 후행 감독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과 영상편집 등을 통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된 것으로 원고 촬영 영상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후행 감독 사이에 공동실연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를 이 사건 영화의 연출·감독에 관한 공동실연자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실연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패)

2022나2003927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가

확정

[제4민사부 2022. 6. 16.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기술자문계약 및 관련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할 기술자문료 산정을 위하여 피고 제품 중 원고 특허 실시 제품과 관련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을 구하는 사안으로, 제1심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인 사건

□ 쟁점

- 전속관할 위반 여부(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그 심리·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이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함(파기이송)

2020나2029444 부당이득금

상고심 계속중

[제5민사부 2022. 6. 23.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 A는 원고의 저작물을 제3자를 통해 건네받아 이에 의거하여 원고 저작물과 유사한 시나리오를 집필하였고, 피고들은 위 시나리오를 드라마로 제작, 방영하였으며, 현재까지 다시보기 서비스 등을 통하여 위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방영하고 있음
- 원고가 이에 대해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침해행위의 금지 및 이로 인하여 얻은 수입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 쟁점

- 시나리오가 존재하는 부분의 저작권 침해 인정여부(소극)
-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의 저작권 침해 인정여부(소극)

□ 판단

- 원고가 A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저작물과 이 사건 드라마 시나리오 사이에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확정된 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드라마 중 시나리오에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의 저작물과 이 사건 드라마의 장면 중 피고들이 드라마를 제작할 때 원고의 저작물을 차용하여 연출하였다고 원고가 특정한 장면들을 저작권 침해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저작물과 피고들의 영상저작물 사이에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이나, 부분적, 문언적 유사성을 찾아볼 수 없고, 일부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대부분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거나 전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패)

2020나2030949(본소), 2020나2030956(반소) 계약금반환청구 등(본소), 매매대금(반소) **확정**

[제21민사부 2021. 8.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분양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으로 통합 오배수배관이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이 아닌 1층 상가의 천장에 설치되자, 그 수분양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경미한 설계변경 등에 대한 동의간주 규정의 적용범위

☐ 판단

분양계약서, 설계변경 사전동의서의 ‘경미한 설계변경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거나 동의가 간주된다’는 규정은 분양받은 상가의 교환가치나 사용가치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경미한 정도의 설계변경에 적용되고, 상가의 재산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 등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설계변경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 (원고일부승)

2020나2025398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심불기각 확정

[제33민사부 2021. 8.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공항개발사업인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거액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 문제로 지연되자, 사업시행자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토지사용료 조정 감면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실시협약의 ‘토지사용료 조정’ 규정의 의미

☐ 판단

실시협약의 '사업시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협약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업기간 또는 토지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실시협약의 체결 목적과 경위, 문언, 사업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사용료 등 재조정 여부를 당사자들의 자율적 합의에 맡기는 취지로 보이고, 당사자들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으로 의제하거나 법원에 의한 조정을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원고패)

2020나2044788(본소), 2021나2013224(반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본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반소) 상고후 소취하

[제8민사부 2021. 8.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본소: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 반소: 제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공시송달로 선고,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자,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해당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

☐ 쟁점

- 본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반소: 형식적으로 확정된 1심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인지

☐ 판단

- 본소: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함 (원고패)
- 반소: 유사 사안에 대한 판례에 따라, 추완항소에 의해 형식적으로 확정된 1심 판결이 취소되기까지는 해당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반소청구를 기각함 (원고패)

2021나2002200 배당이의

확정

[제5민사부 2021. 8.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채권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의 효력(= 한정 유효), 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이 쟁점이 된 사례
-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적극)

□ 판단

-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함
- 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민법 제176조의 취지에 비추어 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압류 등의 사실이 송달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됨.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동거인에게 임차인통지서가 송달된 이상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내용을 알지 않았더라도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채무자의 배우자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고 배당기일에도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부동산 압류사실을 인식하게 된 시점에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2020나2034873 보험금

심불기각 확정

[제33민사부 2021. 9. 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외국의 명의도용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원고(수출업자)가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사건

□ 쟁점 및 판단

- 무역보험공사가 단기수출보험에 의하여 담보하는 위험(= 보험계약자가 수출계약에 따른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국 또는 지급국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관련한 ‘비상위험’ 또는 수출계약 상대방의 ‘신용위험’ 이 현실화되어 발생하는 손실)
- 단기수출보험계약시 피고가 수행하는 국외기업 신용평가의 목적에 수출계약 상대방과 신용조사 대상기업의 동일성을 보증함으로써 명의도용자에 의한 수출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고의로 수출계약 상대방의 동일성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문의에 응하여 신용조사 결과가 정당하다거나 수출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원고패)

2016나2079343 소유권이전등기

심불기각 확정

[제17-2민사부 2021. 9. 1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 쟁점 및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피참가인을 대위채권자(원고)가 아니라 제3채무자(피고)로 하여 보조참가를 한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일부승)

2021나2015992 공사대금

심불기각 확정

[제3민사부 2021. 9. 17. 선고] <일반>

☐ 사안개요

공동수급체의 조합원인 회사를 상대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판단

- 연대채무에서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 분리하여 양도할 수도 있으나, 그에 불구하고 연대채무자들 간의 연대채무관계는 종전대로 존속함
-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타에 양도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해당 연대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채권을 신고함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양도인인 원래 채권자의 채권 중 상응하는 금액 부분에도 미침 (원고승)

2021나2014364 손해배상(기)

확정

[제15민사부 2021. 9. 1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1998년경 발생한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

☐ 쟁점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국가배상의 인정 여부(적극)

☐ 판단

-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의문의 죽음에 관련된 범죄를 규명하고 그 범죄자를 처벌받게 하는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지연되고 증거의 일실과 공소시효의 도과 등으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망자의 유족들로서는 원한과 의구심을 풀지 못한 채 장시간 동안 고통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한바, 국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경찰이 사고 발생 직후에 단순한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하여 현장조사와 증거 수집을 하지 않고 증거물 감정을 지연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뒤늦게 밝혀진 범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안에서, 유족들의 국가배상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원고일부 승)

2020나2019188 관리단집회결의무효 및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제34민사부 2021. 9. 29. 선고] <일반>

[상고심 계속중](#)

☐ 사안 개요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 설정 요건(서면결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건

☐ 판단

집합건물법상 서면결의(제41조)의 경우, 관리단집회가 실제로 개최된 경우의 의결권 대리행사(제38조)와 달리 구분소유자만 할 수 있고, 대리인결의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 중 1인만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설립을 위한 관리규약 설정에 임차인들이 대리하여 서면결의를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함 (원고일부승)

2021나2000839 소유권이전등기

심불기각 확정

[제22민사부 2021. 9.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별도의 합의로 잔금지급기일이 12개월 연장되었고 연장된 기일 도래 전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고 계약 해제를 통지하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 쟁점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별도의 합의에 비추어,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별도의 합의에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연장된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함
- ①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문제로 매도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의무를 정해진 기일에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양도소득세 경감이라는 매도인의 이익을 위하여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시점을 연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함
- ② 매도인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함. 매도인은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연장된 계약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음
- ③ 매도인이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매도인은 당초의 계약기간부터 매도인의 이익을 위하여 유예된 계약기간까지 사이에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과,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를 차단하고 계약의 내용을 실현하여 반대급부를 확보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불리하고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 매수인이 이와 같은 결과를 용인하고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이러한 결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2020나2021624 부당이득금 반환

심불기각 확정

[제21민사부 2021. 10. 1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허위의 차용인을 내세워 이자율 월 10~30%로 정하여 거액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음
- 이후 원고가 차용원금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임의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 중 원본에 충당하고도 남는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의 불법원인급여 적용 여부(소극)

□ 판단

-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을 원본에 충당하고도 남는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수된 부당이득이므로 채권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계속하여 차용하기 위하여 기망의 수단으로 이자 변제를 가장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로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민법 제746조에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함을 내세워 그 반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 (원고일부승)

2020나2011740 손해배상(기)

상고기각 확정

[제4민사부 2021. 10.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인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등을 피고로 하여, 임대사업자인 원고들이 사업지연을 초래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사업시행인가가 있기 전에 사업구역 내 점포 임차인들을 포함한 영업자들을 영업보상의 일환으로 대체영업장으로 이주시킨 후, 해당 사업구역의 특성상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와 그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시행인가가 있기까지 9년 정도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 중에 이루어진 사전적 영업보상조치를 비롯한 피고들의 개별적 행위에 위법성은 없음
-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사전적 영업보상조치로 인해 원고들의 임대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그 소유물인 점포의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효과를 야기하였는데도, 원고들에게 아무런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채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상 원고들의 점포에 관한 사용수익권(임대) 행사에 수인한도를 넘는 제한을 가하게 되면, 점포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일부승)

2020나2049660, 2020나2049677(병합), 2020나2049684(병합) 손해배상(기)

[제12-2민사부 2021. 10. 27. 선고] <일반>

상고심 계속중

□ 사안 개요

피고 회사가 분식회계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여 원고들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같은 날 선고된 2021나2012665 판결, 2020나2036480 판결도 동일 쟁점 사건임]

□ 쟁점 및 판단

- 제척기간 도과 여부 [1년 단기 제척기간 항변은 배척, 3년 장기 제척기간은 병합된 사건별로 소제기 기간 상이하여 일부 원고들의 경우에는 제척기간 도과]
-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관련,
 - ①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주식취득기간(= 허위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날부터 공표일인 2015. 7. 15. 전날까지)
 - ② 공표 전 매각분에 대해 인과관계 부존재를 인정하여 제외할 것인지(일부 적극) [허위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날부터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기 전인 2015. 5. 3.까지는 분식회계나 유사정보가 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그 부분 원고들 청구를 배척함]
 - ③ 공표 전 하락분 중 분식회계 이외 요인으로 인한 주가하락 인정 여부(소극)
 - ④ 정상주가 형성일(= 사건연구 방법을 통한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2015. 8. 21.로 판단), 공표일과 정상주가 형성일 사이의 주가하락분 중 분식회계 이외 요인으로 인한 주가하락 인정 여부(소극)
-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적극, 주위적 청구 부분 각하된 일부 원고들의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대법원 97다32215 판결, 대법원 2006다20405 판결 등 법리에 따라 증명된 손해 일부 인용함]
- 책임의 제한(= 피고 회사 및 대표이사는 70%, 회계법인은 30%로 제한)(원고일부승)

2020나2001507 물품대금 청구

확정

[제33민사부 2021. 10. 2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방산물자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2차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잘못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에 따른 상계의 효력을 다투며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잔금을 청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계약특수조건에 원고에 대해 2차 협력업체의 원가자료에 대해서도 제출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주장비계약(이 사건 제1 내지 4, 6계약)의 경우 원고의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여부(소극)
- 계약특수조건에 위 제출의무를 정한 주장비계약(이 사건 제5계약)의 경우, 복이행보조자 사용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성립 여부(적극), 약관법 위반 또는 국가계약법 위반 특약으로 무효 여부(소극)
-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 제출에 따른 위약벌인 가산금 지급의무의 성립 여부(소극) (원고일부승)

2021나2010294 공개청구 등의 소

확정

[제14-1민사부 2021. 11. 1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 여부 공개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 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가 열람·제공의 대상으로 규정한 개인정보의 ‘이용’ 현황에 ‘비식별조치’ 현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3호를 근거로 ‘비식별조치’ 여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구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1항이 ‘가공’, ‘편집’, ‘이용’ 등을 ‘처리’의 하위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가 개인정보의 열람·제공의 대상을 ‘이용’ 또는 ‘제공’ 현황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리’ 중 ‘가공’, ‘편집’ 등에 해당하는 ‘비식별조치(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조치)’는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열람청구를 배척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는 같은 조 제3, 4, 5호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로 함께 규정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 요구, 처리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행사의 전제가 되는 필수적 권리에 해당하고, 권리, 의무의 내용과 범위도 명확하므로, 그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절차가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하여 ‘비식별조치’ 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되, 다만 피고 회사들이 이미 원고들의 확인 요구에 응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공개청구를 배척함 [항소기각(원고패)]

2018나2001559 차별구제청구

상고심 계속중

[제5민사부 2021. 11.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장애인인 원고들이 영화상영업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차별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파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파일을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장비 등을 제공하며, 영화 등에 관한 정보를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할 것을 청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배리어 프리 영화의 화면해설 및 자막의 제공을 구하는 부분 관련 피고들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에 모두 해당하는지(적극)
- 폐쇄형 상영방식에 따른 서버, 수신기기의 제공을 구하는 부분 관련 피고들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는지(적극), ‘간접차별’에 해당하는지(소극)
- 법원의 구체조치: 피고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도로서, 피고들은 300석 이상의 좌석수를 가진 상영관 및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 좌석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복합상영관 중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총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상영 요일에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만큼 개방형 상영방식에 의하여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거나, 피고들은 300석 이상의 좌석수를 가진 상영관 및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 좌석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복합상영관 중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위 각 상영관 당 2개 이상의 화면해설 수신기기, 2개 이상의 자막 수신기기 및 서버를 제공하여 총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상영 요일에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만큼 폐쇄형 상영방식에 의하여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위 의무는 선택적 관계에 있음 (원고일부승)

2021나2002996(본소), 2021나2003005(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확정

[제3민사부 2021. 11.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가압류 집행 후에 건물의 전유부분을 취득한 원고가 이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강제경매절차에서 건물 전유부분을 매수함.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에 따라 위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과 함께 원고의 대지사용권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기각 부분은 항소되지 않았고, 당심에서는 반소청구만 다툼어짐)

□ 쟁점 및 판단

-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지고, 이후 그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사후에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였다면 그 시점에 대지사용권이 성립하는지(적극), 가압류의 효력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 미치게 되므로, 가압류에서 전이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도 취득하는지(적극)
- 1필지의 일부에만 집합건물이 있는 경우 법정대지(= 1필지 전체), 집합건물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법정대지(= 그 여러 필지 전체), 1필지에 여러 집합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 토지가 법정대지로 되는 건물(= 그 여러 집합건물)
- 한 필지(1토지)는 집합건물 두 개동(1, 2동) 모두의 대지가 되는 반면, 다른 한 필지(2토지)는 그 중 한 개동(2동)의 대지가 되는 경우, 1토지에 관하여 각각의 전유부분에 필요한 대지사용권의 지분 비율 계산은 ‘1동에 속하는 전유부분들의 전체 면적’ 및 ‘2동에 속하는 전유부분들 중 1토지에 위치한 부분의 면적’의 합계 중 각 전유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할 수밖에 없고, 2동에 속하는 전유부분들 중 1토지에 위치한 부분의 면적은 ① 2동의 건축면적 중 1토지에 속하는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후, ② 이를 2동에 속하는 전유부분들의 전체 면적에 곱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반면 2토지에 관하여 성립하는 대지사용권은 2동에 속하는 전유부분들의 면적 비율로 계산하면 충분함) (반소원고일부승)

2021나2009133(본소), 2021나2009140(반소) 손해배상(기)

상고후 소취하

[제13민사부 2021. 12. 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3인조 강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과 그 가족들, 위 범행의 피해자들(이상 원고들)이, 당시 수사과 기소를 담당하고 유죄판결확정 이후 제보된 진범에 대한 내사사건도 담당하여 혐의없음의 내사종결처리를 하였던 검사(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 쟁점

제보된 진범에 대한 내사사건에서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고 내사사건을 종결한 것에 검사(피고)의 위법행위 성립 여부와 귀책사유 유무

□ 판단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불행사는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3다2951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사안에서,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과 기소를 담당하였다가 이후 제보된 진범에 대한 내사사건도 배당받아 담당하게 된 검사로서는 내사가 선입견 없는 상태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으로 돌아가 관련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대조하고, 서로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실제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들을 취한 후 이를 토대로 진범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였어야 함
- 피고가 내사사건을 지휘하면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현저한 불합리 등이 인정되어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고, 그 위반에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항소기각(원고일부승)]

2021나2003166 손해배상(기)

심불기각 확정

[제21민사부 2021. 12. 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피고의 요청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주채무자가 되었던 원고가 피고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약정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 쟁점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음

- ①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는 원고가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가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지 피고가 약정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
- ②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경매를 진행하여 대출원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고, 이후 원고에 대하여는 상환을 청구하거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③ 원고는 신용불량 상태로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 ④ 채권자가 원고에 대하여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
- ⑤ 원고는 민법상 사전구상권(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한데, 대출금 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피고가 바로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민법 제443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전구상권자에 대한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함 (원고패)

2021나2016810 청구이의

심불기각 확정

[제16민사부 2021. 12. 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 피고 등 3사가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상호 간에 피고가 전체 지분을 책임시공하되 다른 공동수급사는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피고에게 정산지급하기로 하는 시공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옴.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후 원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잔류하되 원고의 잔여 시공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피고가 위 시공협약에 따라 대신 수행하기로 합의하여, 피고가 나머지 공사를 전체 시공하고 해당 공사대금을 정산 처리하여 왔으나, 다만 원고의 정산금 일부가 미지급 남아 있는 사안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정산금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가 문제된 사건

□ 쟁점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의 시공협약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채무자에 대해 발생한 정산금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의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원의 지위에서 법률과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업무에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조합 관련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됨(민법 제704, 706, 711, 712조)
-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공동수급체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와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조합원인 자신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약정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처리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판단한 사례 [항소기각(원고일부승)]

2020나2025350 교회출입금지 및 방해금지 등

상고기각 확정

[제35-3민사부 2021. 12. 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목사와 교인(원고 측)과 장로파 교인(피고 측)으로 분열된 A교회의 분쟁 사건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담임목사인 원고 B는 ① 교회 건물 출입 방해 금지, ② 설교, 예배 및 교회 직무집행 방해 금지, 나머지 원고들은 ③ 교회 건물 출입 방해 금지, ④ 원고 B가 주관하는 예배, 설교, 기타 집회활동 등 참석 방해 금지를 청구한 사건

□ 쟁점

- 교회의 담임목사가 정년에 도달하여 은퇴한 경우 계속하여 담임목사로서 시무권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 나머지 원고들이 A교회를 탈퇴하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제1심에서는 원고 B의 담임목사로서의 지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고, 이 부분은 제1심 판단과 같이 담임목사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데, 당심 계속 중 원고 B의 정년이 도달함. 민법 제691조, 총회헌법 등 규정에 따라 임시당회장이 파송되거나 후임 담임목사가 청빙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원고 B가 담임목사로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고 B가 정년 도달 전 원고 측 교인들로만 임시 공동의회를 열었고, 위 공동의회에서 원고 B에게 은퇴 후에도 A교회 예배 인도 및 설교를 계속 맡긴다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하였으나, 위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함
- 당심 계속중 피고 측에서 제직회를 열어 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하였고, 노회에서 A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는바, 위 제직회 결의 및 임시당회장 파송 요청, 그에 따른 임시당회장 파송이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보아, 위 파송 이후에는 원고 B가 담임목사로서의 시무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함(원고 B의 위 ①, ② 청구 모두 기각)
- 제반사정에 비추어, 나머지 원고들이 A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A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나머지 원고들의 위 ③ 청구 인용, 원고 B가 담임목사임을 전제로 한 위 ④ 청구 기각)(원고일부승)

2021나2025319 추심금

심불기각 확정

[제13민사부 2021. 12. 1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사업비지원금계약에 기한 지원보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추진위원회와 피고(신탁회사) 사이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기하여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가지는 보관금의 교부청구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 및 채권압류·추심결정을 받은 다음,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추진위원회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기하여 피고(신탁회사)에게 가지는 보관금 관련 채권의 내용
- 가압류결정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계약 종료에 따라 구할 수 있는 잔여 보관금 지급청구권)

□ 판단

-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자금관리계좌 개설 및 관리, 자금 집행절차 및 요건 등의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돈에 대하여 권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피고를 상대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할 수는 없고, 단지 위 비용의 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해당 지출처에 지급하도록 피고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됨. 다만, 추진위원회로서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대리사무 기간이 만료되는 등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피고에게 ‘잔여재산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원고의 가압류결정 등은 추진위원회가 계약 해지 등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잔여 보관금 지급청구권에 한하여 미친다고 본 사례 (원고일부승)

2020나2039878 매매대금반환

심불기각 확정

[제3민사부 2021. 12. 1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외 1인” 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로서, 원고가 자신이 매수인임을 전제로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 뒤에 “외 ○인” 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범위

☐ 판단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외 1인” 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 계약 체결 시 매도인에게 “외 1인” 에 해당하는 매수인의 명의를 특정하여 고지한 바가 없고,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를 특정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는 매도인과 명확하게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패)

2021나2011310 손해배상(기)

상고기각 확정

[제5민사부 2021. 12. 1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들은 피고 법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학교의 재학생들 및 그 학부모들인데, 피고들이 기습적으로 이 사건 학교의 폐교를 통보하고 무단으로 이 사건 학교를 폐교함으로써 원고들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쟁점

피고들이 피고 법인이 운영하던 학교의 폐교를 결정한 것이 그 재학생들 및 학부모들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사립초등학교의 공공성에 비추어 학교법인이 사학의 운영을 그만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폐지로 인하여 재학 중인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선택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의 교육진로에 대한 결정권 등을 침해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고려한 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한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석하여야 함
- 학교법인이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경위와 불가피성,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였는지 여부, 재학생의 인근 학교로의 분산배치나 잔류 희망 학생을 위한 상당기간의 존치계획 등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일탈하였다면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음
- 피고가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관할 교육청 및 학교 구성원들과의 의견 수렴절차 없이 일방적인 폐교를 결정 통보하였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폐교인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학교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폐교되는 상황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함. 피고의 행위는 법령을 위반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법인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와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위자료로 재학생은 각 300만 원, 학부모는 각 50만 원 인정 [항소기각(원고일부승)]

2021나2000655 부당이득금

심불기각 확정

[제33민사부 2022. 1. 1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기
망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제 등을 주장하며, 기지
급한 조합원부담금 등의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조합가입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및 기망의 인정 여부(적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약 체결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을 인정함(1심
에서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를 인정하였으나, 당심에서는 기망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함)
- 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될 아파트의 규모와 층수, 사업부지 현황은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 원고들이 모두 고층 호실을 배
정받아 더 많은 조합원부담금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층 아파트
의 건축 가능성과 층수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하였다고 보임
- ② 그런데 이 사건 사업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 혼재된 지역이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피고가 광고한 것
처럼 고층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함. 피고가 이를 설명하였다거
나 원고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음
- ③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가능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실제 현재까지도 여전히 준비 중임. 원고들
이 만약 이를 알았다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고층배정에
따른 더 많은 조합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④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규모를 ‘지하2층, 지상 6-24층, 9개동 총 714
세대’로 명시하고 원고들에게 고층의 동호수를 배정하여 더 많은 조합
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음. 이는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함 [항소기
각(원고일부승)]

2021나2002446 낙찰자 무효 확인 등

확정

[제14-3민사부 2022. 1. 1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피고 정비사업조합이 실시한 입찰에 참가하였다가 탈락한 원고가 낙찰자 선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선정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는 탈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실시한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및 그에 기한 계약을 무효라고 해석하기 위한 기준

□ 판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입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대법원 2006. 6. 19.자 2006마117 결정)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조합이 실시한 입찰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당해 입찰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기준을 제시한 다음, 낙찰자와 체결한 계약이 이미 이행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는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낙찰자 선정에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패)

2021나2008178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심불기각 확정

[제4민사부 2022. 1.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상가점포 사전분양계약상 수분양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점포내부 기둥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점포내부 기둥 현황에 관한 고지의무 인정 여부(적극)
- 수분양자의 법정추인 해당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점포 내부 기둥 현황에 비추어 분양자에게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 내부 기둥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함
- 다만 수분양자는 완공 후 점포 내부 기둥의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으로 인한 착오의 상태에서 벗어나 분양계약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접수 후 소장 부분 송달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분양대금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분양대금 잔금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법정추인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후에 분양자에게 도달한 이 사건 소장 부분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원고일부승)

2021나2028196 손해배상(기)

심불기각 확정

[제21민사부 2022. 1.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들이 1980년 노조 간부로 활동하다가 수사기관에 불법 체포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한 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018년 재심무죄 판결을 받고 종전 유죄판결에 의한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쟁점

원고들이 재심을 청구하기 전인 2010년에 피고(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위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종전 소송의 청구를 명시적 일부 청구로 보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① 원고들은 종전 소송에서 ‘불법 체포와 가혹행위, 변호인 선임권 미고지, 면회 방해’를 불법행위로 특정하였음
- ② 선행사건의 공동 원고 중 1명은 형사재심을 청구하면서 불법구금을 청구원인에서 철회하였음
- ③ 재심으로 유죄판결이 취소되기 전에는 선행사건에서 유죄판결의 확정애 따른 정신적 손해를 주장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④ 따라서 원고들은 일부청구로서 불법구금행위 자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유죄판결의 확정애 따른 정신적 손해는 추후 재심절차를 통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별도로 청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임 (원고일부승)

2021나2009669 건물등철거

심불기각 확정

[제12-2민사부 2022. 1.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타에 임대하던 중, 피고와 사이에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매도하되 가설건축물의 신고명의자 변경이 곤란한 사정을 감안하여 토지 등을 포괄양수도하고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특약을 포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동산)포괄양수도 계약도 함께 체결함
- 하남시장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3차 연장신고에 대해 수리 불가를 통보하고, 신고명의자인 원고에게 가설건축물 철거를 명함. 원고는 피고의 매수 이후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 부과된 2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고, 피고가 가설건축물의 멸실신고를 한 후 이를 철거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임관계에 따른 필요비 상환 또는 손해배상 등으로 위 2차 이행강제금 납부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위임관계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의 발생 여부(적극)
- 가설건축물 용도에 관한 원고의 기망 여부(소극)

□ 판단

-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동산에 불과하고, 그 소유권은 피고에게 이전되었음. 그럼에도 신고명의가 원고로 그대로 남아 있는 관계로 피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적법하게 계속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등 대관청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를 묵시적으로나마 원고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수행 과정에서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피고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위 납부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피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2차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도 없음 (원고승)

2021나2022426 손해배상(기)

심불기각 확정

[제7민사부 2022. 1.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홈쇼핑 업체와 홈쇼핑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홈쇼핑 업체와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택배집배점 계약을 통하여 운송업무를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택배집배점들에게 위탁함
- 피고의 택배집배점 A가 홈쇼핑 방송이 예정된 상품을 미리 인도받아 창고에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물품이 전소 멸실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1심에서는 다른 주장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만을 유지함)

□ 쟁점

- 택배집배점 A가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피용자에 해당하는지(적극)
-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소극)

□ 판단

- 피고가 A에게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A는 주 6일 동안 택배집배점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겸업할 수도 없었던 점, 피고가 택배집배점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지시, 통제를 통해 피고가 직접 채용한 직원이 집화 업무를 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관리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A의 택배집배점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함
- 홈쇼핑 방송의 특성상 택배 회사의 피용자로서는 상품을 미리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홈쇼핑에서의 배송지시가 접수되면 곧바로 운송장을 부착하여 배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점, 이러한 필요에 따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의 피용자가 계속적으로 판매 예정 상품을 미리 인수하여 온 점, 그러한 과정에 피고의 창고까지 사용되었음에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피용자가 판매가 예정되어 있는 물건을 원고로부터 미리 인수받았다는 사정만으로도 원고가 ‘A가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홈쇼핑 판매 예정 물건을 인수하였다’고 인식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일부승)

2021나2033716 추심금

확정

[제3민사부 2022. 1. 2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가압류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은행을 상대로 예금채권을 추심하려 하자, 이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 이후 새로 개설한 예금계좌에서는 예금이 모두 인출되었고, 가압류 집행 당시 이미 존재하던 계좌의 예금청구권은 대출금반환채권과 상계하여, 피압류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추심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

□ 쟁점

- “장래에 [...] 가지는 [각종 예금] 채권”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그보다 늦게 신규 개설한 예금계좌에도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미치는지(소극)
- 예금채권이 압류된 거래업체에 대하여 신규 예금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금융업계의 상관습이 존재하는지(소극)

□ 판단

- 가압류보다 늦게 개설한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권리의 특징이 불가능함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예견된다고 볼 수도 없어 피압류적격부터 갖추지 못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이 있으면 시중은행이 신규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는 사실인 상관습은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그러한 상관습이 존재한다 하여도 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신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어도, 가압류의 효력이 그 집행 당시 존재하지도 않던 신규 계좌에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님
-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는 법리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예금계약)가 존재하여 권리의 특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예금채권의 발생까지 상당 정도 예측할 수 있으나, 당장은 잔고가 없어 구체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음(대법원 2010다76870 판결). 잔고가 없는 계좌에 장래 예입할 금액의 반환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는 이상, 가압류의 제3채무자 입장에서 이를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임 [항소기각(원고패)]

2021나200742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상고기각 확정

[제12-2민사부 2022. 2. 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이 사건 협정’)에 따라, 원고의 배전설비인 전주(전봇대)에 피고가 인터넷 통신선을 설치함
- 한국도로공사가 동해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이유로 전주 및 통신설비의 이설을 요청함
- 한국도로공사가 제기한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가 한국도로공사에 통신설비 이설비용 상당액인 판결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인해 원고가 한국도로공사와 관계에서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이 사건 협정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종국적으로 피고의 통신설비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 피고)

□ 판단

- 이 사건 협정 조항 등은 통신설비 이설공사의 시행주체뿐만 아니라 그 비용부담자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인하여 원인자인 한국도로공사와의 관계에서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배전설비 이설비용은 원고가, 통신설비 이설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협정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① 원고는 이 사건 통신설비 이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아니고,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인한 타공사 비용 부담을 정한 구 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는 원고와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대외적 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일 뿐임. 원고와 피고는 전기설비 제공제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통신설비 이설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 있음
- ②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설비 제공제도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의무적으로 관련 설비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그 대가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산정한 금액만 지급받음. 원고가 받은 점용허가로 인해 피고는 별도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고, 만약 그렇지 않고 피고가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였을 것임
- 피고가 통신설비의 이설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2021나2003999 전기사용계약부존재 확인의 소

상고취하 확정

[제21민사부 2022. 2. 1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전기사용 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청자가 해당 전기사용장소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신청자에 대하여 전기사용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

☐ 쟁점

한국전력공사 공급약관 제8조 본문의 ‘전기사용장소의 소유자가 아닌 고객이 전기사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효력 요건인지 여부

☐ 판단

전기사업법의 입법취지 및 규율내용과 전기사용장소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의 내용 및 규율형태를 종합하면, 전기사용장소 소유자의 동의는 전기사업법상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사용 변경계약 체결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전기사업자와 고객이 개별적으로 협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공급약관이 전기사용 변경계약의 유효성을 좌우하는 효력요건으로 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함 (원고승)

2021나2036470 손해배상(기)

확정

[제21민사부 2022. 2. 1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인해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자를 상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 ① 상당한 규모의 상가건물 내부에 기둥이 설치될 수 있음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나, 벽면이 기둥의 중심을 지나게 하는 등 그 침범 면적을 최소화하고 이웃한 상가간 침범 면적이 같거나 비슷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상가 내 기둥의 위치와 형태, 면적 및 인접 상가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관행상 원고들이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움
- ②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준 도면에 ‘□’ 표시가 있기는 하나, 위 ‘□’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별도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크기나 면적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았음
- ③ 기둥이 있는 상가와 없는 인접 상가의 평당 분양가가 동일한데, 분양자가 분양가를 정함에 있어 상가의 위치, 엘리베이터 등과의 접근성,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였을 뿐, 기둥의 존부나 위치, 크기 등은 반영하지 않았음
- ④ 이 사건 각 상가 내 기둥으로 인한 공간 활용 및 동선 제한, 가시성 방해, 교환가치나 사용가치 감소 등에 비추어, 원고들로서는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등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⑤ 분양계약에 “타입이나 호실에 따라 내/외부 창호,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의 크기, 구성, 형태, 기둥의 유무 및 크기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위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문구만으로는 수분양자들에게 스스로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에게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고지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거나 그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일부승)

2021나2006196(본소), 2021나2006202(반소) 손해배상(본소), 대여금(반소)

[제29-1민사부 2022. 2. 10. 선고] <일반>

확정

□ 사안 개요

투자조합A가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B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조합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음. 원고가 A조합의 대표조합원인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는 고지·설명의무 위반의 기망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원고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소극)
- 피고의 기망 불법행위 인정 여부(적극)
 - ① 피고가 A조합의 자산 현황, 특히 조합재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B회사 주식을 타에 양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위 주식을 다시 반환받는 것도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나아가 A조합에 투자하는 것이 B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
 - ②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되느냐,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알았더라면 A조합에 아예 출자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출자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함
- 손해액 산정 시점(= 불법행위시) [불법행위와 동시에 손해가 현실로 발생한 이 사건에는 피고가 들고 있는 예외적 판례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
- 과실상계 여부(소극)
- 원고가 A조합 탈퇴시 받은 주식 가액의 손익상계 여부(적극)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A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한 이득으로 상당인과관계 인정],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득액의 손익상계 여부(소극) [주가 상승분에는 B회사 운영자인 소외인의 주가 조작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 손해배상액의 제한(=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50%로 제한함)
- 소멸시효 완성 여부(소극) (원고일부승)

2021나2013231 이사회지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확정

[제38-3민사부 2022. 2. 1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 교단의 정기총회에서 A를 총회장직에서 해임하고 원고 B를 총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이후 피고 유지재단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독자적으로 이사장과 이사들을 선임함
- 원고들(교단과 B)은 피고 유지재단을 상대로 위 이사장 및 이사들 선임결의가 원고 교단 헌법 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들에게 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원고 교단과 피고 유지재단의 관계, 원고 교단 헌법 등에 반하는 피고 이사회의 이사장 및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 판단

- 원고 교단 재산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피고 유지재단의 설립 목적 및 경위, 피고 유지재단의 운영 형태, 특히 원고 교단 임원 및 피고 유지재단 이사회 구성에 관한 관련 규정의 변천 및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유지재단은 원고 교단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원고 교단 구성원을 대표하는 원고 교단 총회의 결의나 원고 교단 헌법 등에 반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유지재단 이사회가 원고 교단 헌법 등에 반하여 한 이사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함
- ① 교회에 귀속된 재산은 교회 구성원들의 총유이고, 교회 재산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인 유지재단을 설립하는 경우 그 운영 및 의사결정에 교회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② 피고의 설립 목적은 ‘교회 자산의 관리·유지 및 선교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제공’에 있고, 실제로 피고는 원고 교단 등의 재정집행행위의 대외적인 법적·경제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③ 원고 교단과 피고는 원고 교단 헌법 등에 따라 원고 교단의 임원들과 피고 이사회의 이사들을 일치시켜 원고 교단과 피고가 통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조직운영체제를 구축력 있는 관행으로 수용하여 왔음
- ④ 피고의 이사회로서는 피고 정관에 따라 피고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원고 교단 헌법 등에 반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이 피고의 정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음 (원고승)

2020나2043884 손해배상(기)

확정

[제14-2민사부 2022. 2. 2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피고 투자증권사와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한 원고가 약정한 자문료가 과다하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금융자문계약에서 정한 자문료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자문료의 범위

□ 판단

대법원은,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및 신탁보수에 관한 사건에 적용하여 왔는바(대법원 91다8722, 8739 판결, 대법원 2004다49393 판결, 대법원 2011다107900 판결, 대법원 2013다26425 판결), 금융자문계약의 성격을 사무처리의 위탁을 본질로 하는 위임계약이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 투자증권사가 수행한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100억 원의 자금조달(피고 투자증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저축은행이 대출 실행)에 관한 자문료 10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자문료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고 투자증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사례 (원고일부승)

2021나2019406 소유권이전등기

상고심 계속중

[제17-2민사부 2022. 3. 1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 쟁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하는 부동산을 양수함에 있어 양수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양도인과 그렇지 못한 양도인으로부터 각 1/2 지분을 양수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

□ 판단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하는 부동산의 양수인이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양도인 요건의 구비 여부는 대표조합원 1인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양도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양수인이 여러 명의 양도인으로부터 지분을 각각 양수한 경우에는 그 지분별로 해당 지분을 양도한 양도인이 양도인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따져보아야 함
-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에 있어 공유자 중 일부만 동의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조합원의 분양신청권, 총회에서 의결권, 조합 임원의 선임권과 피선임권 등의 행사에 있어 공유자 전원이 대표조합원 1인을 통하여 이를 행사하게 되지만, 공유자 전원이 조합원 자격은 있으나 그중 일부가 양도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인 전원이 양도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거나 대표조합원 1인만이 양도인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일부승)

2021나2025180 손해배상(기)

확정

[제9민사부 2022. 3. 3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은 원고가 부당해임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 잔여임기 동안의 보수청구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원고 잔여임기가 더 길게 인정되어야 하는지(소극)
- 원고를 해임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소극)
-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인 원고에게 보수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상법 제388조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원고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한 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① 원고 재직 당시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당해연도 이사의 보수 총액을 10억 원으로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한도 내에서 그룹 회장 K가 임원들 개개인에 대한 보수액수를 정하여 지급하였던 사실, 원고 해임 이후의 주주총회 의사록에만 과거와 달리 “임원 개인별 보수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할 것”의 내용을 추가하여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됨

② 피고 대리인이 이 법원의 제4회 변론기일에서 2021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종전대로 내부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적어도 원고가 피고 이사로서 재직하였던 기간 동안에는, 피고는 당해연도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의 보수 총액만을 승인한 다음 이사 개개인에게 지급될 각 보수의 구체적 액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그룹 회장 K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였고, 실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원고뿐 아니라 甲, 乙 등 피고의 다른 이사들도 각자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③ 이와 같이 피고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피고 이사들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이 적법하게 정해진 이상 이러한 보수의 결정과 지급 방식이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러한 점에서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조차 없었던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4342 판결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함),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원고로서는 보수청구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임 [항소기각(원고일부승)]

2018나2059596 퇴학취소의 소

심불기각 확정

[제14-3민사부 2022. 4. 1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미성년자인 원고의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퇴학조치의 효력을 다툰 사건에서, 원고 패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항소기간 종료일(2018. 10. 11.)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항소제기 하루 전(2018. 10. 10.)에 성년에 이른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가 법정대리권의 소멸을 주장하며 법정대리인이 제기한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툰 사건

□ 쟁점

법정대리권 소멸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법정대리인이 한 항소의 효력(= 유효)

□ 판단

-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본문은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위 규정을 준용하는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권 소멸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7다7256 판결), 원고 친권자의 법정대리권도 피고에 대한 소멸통지가 없었던 이상 소송절차상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항소제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음(다만, 본안판단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함) [항소기각(원고패)]

2021나2014036 용역비

판시유지²⁾

[제38-3민사부 2022. 4.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집합건물 관리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고 후속 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관리업무가 종료되었음
-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3이 정한 분양자의 건물 관리의무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존속하는 임시적 권한이므로, 관리단이 실제 성립되면 관리단은 건물 관리에 관하여 발생한 분양자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용역계약상의 용역비의 지급을 구함

□ 쟁점

- 집합건물법 제9조3을 근거로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분양자와 관리단 사이에 법정위임관계가 성립하는지(소극)

□ 판단

- 집합건물법의 체계, 그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들이 피고의 수입인이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3은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분양자에게 수분양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야 할 일종의 법률상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위 규정을 통해 아직 실질적인 자치 관리를 개시하지도 않은 관리단이 분양자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관리단과 분양자 사이에 법정위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들이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자신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 관리단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일부승)]

2) 속보게재 쟁점에 대한 판시는 유지되었고, 다만 다른 쟁점 관련하여 일부 파기환송된 경우임

2021나2029670 부당이득금

확정

[제20-1민사부 2022. 4.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토지 지분에 관하여 채납처분에 기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이를 매수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공매절차가 무효로 판명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각 대금에서 1순위 배분된 채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 매수인이 공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여 등기까지 마쳤으나 공매절차가 무효여서 공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그 매각대금 배분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채납처분비의 부담 주체(= 공매를 실행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지방자치단체)

□ 판단

- 매수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경매채권자에게 매각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이는 공매절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함
- 비록 지방세징수법에는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채납처분비의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이 채납처분절차에 준용된다고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의 취지와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한 공매를 실행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지방자치단체가 채납처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에서 채납처분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분됨에 따라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채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일부승)

2021나2035460, 2022나52(독립당사자참가신청) 관리비

상고심 계속중

[제24민사부 2022. 4. 2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관리단(원고)이 구분소유자이자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① 공용부분 관리비, ② 특별수선충당금, ③ 전유부분 관리비(예비적으로 부담이익반환금)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에 따른 파기후 환송심 판결임)

□ 쟁점

- 이 사건 관리규약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관리규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관리단이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적극), 특별수선충당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소극), 전유부분 관리비(예비적으로 동액 상당의 부담이익반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소극)
-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 판단

-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에 의한 합의 기간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간 내로 제한되는데, 이 사건 관리규약에 대한 서면결의의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1년 8개월은 사회통념상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기간이 아님), 일부 호실의 구분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새로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서면결의가 4/5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 관리단은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의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환송판결). 따라서 원고는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음
- 특별수선충당금 청구권 부분의 경우 법률규정에 의하여 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관리규약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전유부분 관리비 청구를 할 수 없고, 원고의 출연으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거나 피고가 면책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담이익반환청구권도 인정할 수 없음
-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변론이 재개되지 않는 한 부적법함 (원고일부승, 독립당사자참가신청 각하)

2021나2019826(본소), 2019833(반소) 부당이득금

확정

[제3민사부 2022. 4. 2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주상복합건물(‘이 사건 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인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된 2008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면서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상가관리비, 관리비에 치금, 장기수선충당금 등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옴. 원고는 2015. 4. 17.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외부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맡겨, 감사보고서를 작성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계분리를 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서로 정산·변제하기로 피고와 합의함. 원고가 그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피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약정금으로 청구한 사건

□ 쟁점

-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조건인지 또는 기한인지(= 기한), 기한이라면 기한이 도래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부관으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되면 이를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그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한으로 보아야 하는데, 사실이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면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함. 나아가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함
- 원고와 피고는 외부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계분리를 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정산·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외부회계감사는 그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실현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를 기한으로 보아야 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합의가 있는 지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한 바 없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감정을 신청하지도 않았으므로, 불확정기한의 이행기한이 도래했다고 보아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 (원고일부승)

2021나203998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등의 소

확정

[제7민사부 2022. 5. 1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A의 피고(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원고(주식회사)가 52억 원의 한도로 연대보증을 함. 피고가 연대보증계약 당시 징구한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 2인 출석, 2인 찬성’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원고가 연대보증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를 유보하고 지급했던 대출원리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 이사회결의 없는 채무보증행위에 있어 대출금융기관의 악의·중과실 인정 여부

□ 판단

-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 ① 회사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그 상대방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서 유효하게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원고는 B가 1인주주인 1인회사로서 B와 대표이사 C가 직접 참석한 상태에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음
- ② 비록 원고의 이사가 총 4명이고 그것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구받은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었지만, 피고로서는 단순한 업무상의 착오로 이사회 의사록의 흠결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③ 원고와 지배주주가 동일한 A가 원고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 진행에 필요한 대출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던 것으로서, 금융기관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를 정상적인 법률행위라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큼. 외관상 원고가 자신의 사업 영위를 위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계약 체결 과정에 원고의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가 직접 참여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절차가 결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2021나2034016 전부금

심불기각 확정

[제27민사부 2022. 5.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건설회사 갑으로부터 갑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해당 압류 및 전부명령상 피전부채권은 “해당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을 제외한다”고 표시됨
- 피고는 동법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의 공제를 주장하였고, 원고는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해당 공사도급계약서 자체의 기재만으로는 노임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다툼

□ 쟁점

-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붙임서류로 표시된 ‘원가 및 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상당에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기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에 충당된 액수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잔존 공사대금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소정의 압류금지채권 금액의 산정 방법

□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급계약서의 부속서류에 노임의 합산액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경우 위 부속서류도 계약서의 일부로 도급계약서 자체로 노임액이 얼마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도급계약서의 붙임서류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의 일부이므로 붙임서류에 노임액이 얼마인지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다면 도급계약서 자체로 노임액이 얼마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위 노무비 상당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기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에 충당된 액수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text{노무비} / \text{총공사대금} \times \text{미지급공사대금}]$ 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원고일부승)

2021나2038063 손해배상(기)

심불기각 확정

[제13민사부 2022. 5.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피고가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진행 중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이중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으로 구한 사건

□ 쟁점

- 부동산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당사자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제1심 소송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위반 외에 피고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 매도인이 부동산을 이중매도하고 그 중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으므로(대법원 65다947 판결),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함 (원고일부 승)

2021나2039011 부당이득금

상고심 계속중

[제19-2민사부 2022. 5.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1(연예인)의 매니지먼트사인 피고2가 피고1 및 피고2의 명의로 원고와 드라마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횡수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던 중 피고1이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구속됨(이후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됨)
- 원고가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출연료 반환, 계약조항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3(피고1의 가족회사)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출연계약의 해지 여부(적극) [이 사건 출연계약은 피고1의 귀책사유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및 기지급 출연료 중 미촬영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인정 여부(적극)
- 출연료 중 이미 촬영이 끝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인정 여부(소극)
- 이 사건 출연계약상 위약금 약정의 성격(= 위약벌) [이 사건 출연계약에서 위약금 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실 손해 배상을 전제로 하는 여러 조항들이 존재하는 점, 위약금 액수가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로서 상당한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위약금 조항은 출연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및 위 조항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소극) [출연계약상 위약벌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소극) [원고와 피고1 및 피고2 사이에 교섭을 거친 계약 또는 특정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따른 약관이 아닌 개별 약정에 해당함]
- 원고의 유니버설에 대한 판권료 반환금 상당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적극) [피고1은 이 사건 드라마 촬영 도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연배우가 교체될 경우 원고의 해외 콘텐츠 판매 등에도 문제가 생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주연배우 교체에 따라 재촬영된 2회분 해당 손해배상 인정 여부(적극)
- 피고3의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무 부담 여부(소극),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인정 여부(소극) (원고일부승)

2022나2005329 이사진위 존재 확인

확정

[제14-1민사부 2022. 5.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의 이사로 당선된 원고가 ‘정비구역 내에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 하였으나, ‘선임일 당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는 이유로 그 지위가 다투어지자 피고를 상대로 이사진위 확인을 구한 사건

□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 판단

- 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어 2019. 10. 24.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조합 임원의 자격으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을 요구하고 있는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를 임원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였던 정관에 대하여 ‘피선출일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면 임원 자격이 있다고 해석한 하급심의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2436)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그 후 신설된 위 도시정비법의 규정은 위 정관의 문언과 달리 선임일 현재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② 위 규정이 개정이유를 ‘관련비리 근절을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선임일 당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원고패)

2021나2009744 공사대금 등

확정

[제7민사부 2022. 6. 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제1심 공동피고 A회사(건설회사)는 공동도급인(甲, 乙)으로부터 공사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하면서 대표이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B와 거래관계에 있던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C에게 8,300만 원이 배당되자, A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B,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명의신탁약정 취소) 및 원상회복(배당금지급채권 양도)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지(적극)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주위적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C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직접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예비적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C를 상대로 B에게, B를 상대로 공동도급인에게’ 순차적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A회사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B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 없고, 공동도급인 중 1인은 A회사의 직전 대표이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형태는 종국적으로 C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을 사해행위의 채무자인 A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달리 취소채권자인 원고들이 C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직접 위 배당금지급채권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는 없음
- 만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원물반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C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상대방은 B가 아니라 공동도급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에 대신하는 이익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하여 B는 어떤 권리를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상회복 방법으로 C를 상대로 B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없음. 나아가 원고들이 B를 상대로 공동도급인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도 없음 (원고일부승)

2021나2038582 부당이득금

확정

[제9민사부 2022. 6. 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주택건설사업시행자)는 피고(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피고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위 매매계약을 위하여 행정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용도폐지처분이 이루어져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됨
- 원고는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지급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함

□ 쟁점

- 법령에 규정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기한 용도폐지처분은 무효인지 여부(적극)
- 용도폐지처분이 무효인 경우, 용도폐지 이전의 행정재산에 대한 사법상 매매계약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판단

- 공유재산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등 특정한 사유에 한하여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용도폐지는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임. 특히 공유재산법이 행정재산의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제19조), 행정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용도폐지 사유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관련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음
- 이 사건 용도폐지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행정재산에 대한 사법상 매매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임
-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약정의 무효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강행법규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하는 셈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위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여러 협의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 이전에 무효인 용도처분을 한 피고가 이에 대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라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고 할 수도 없음 [항소기각(원고일부승)]

2019나2029271 손해배상(기)

확정

[제4민사부 2022. 6. 1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1967년 납북되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후 반공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어부들의 유가족들인 원고들이 경찰수사관, 담당 검사 및 법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쟁점

- 경찰관들의 불법 체포·구금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는지(적극)

□ 판단

- 경찰관들이 1969. 1. 27. 피고인들을 임의동행한 다음 반공법위반 등 피의사건을 인지하고 구속수사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였으며 다음날 검찰청으로부터 전원 구속송치하라는 수사지휘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그날부터 매일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구속영장은 그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시점인 1969. 2. 5. 발부되어 다음날 집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언제든지 경찰관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음에도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함께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1969. 1. 27.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69. 2. 7. 이전까지 11일 동안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감금되어 있었다고 보았음
- 이는 경찰관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피고인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 또는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차 재심청구 당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써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기각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된 후, 2, 3차 재심청구는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계속 내려지는 등 피고인들의 형사판결은 취소되지 아니하였음
- 경찰관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그 부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수사지휘 및 기소와 법관의 재판업무 관련한 불법행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원고일부승)

2021나2011907 예금채권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 계속중

[제7민사부 2022. 6.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소외인들이 창고업자 등과 공모하여 다중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육류 재고목록 등을 이용하여 대출채무자가 담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아 형사 처벌됨(이른바 ‘미트론 사기 사건’).
- 금융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한 선순위 양도담보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담보물 매각대금이 입금되어 있는 각 은행계좌들의 해당 예금채권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 원고가 담보물에 관하여 유효한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은 유형을 아래 3가지로 구분하여 그 유효 여부를 판단함

① 원고가 최초 화주로부터 1순위로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은 경우

A(최초 화주) → B(양도인) → A(공급받는 자, 대출채무자) → 원고(양도담보권자)의 유형으로서, B 앞으로의 담보물 이전은 형식적 거래이지만, A는 적법한 소유자로서 명의를 회복하였고, 원고는 A로부터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았으므로 유효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함.

② 최초 화주와 거래명세표상 양도인이 동일한 회사이고, 그 회사로부터 양수인을 거쳐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은 경우

A(최초 화주 겸 양도인) → B(공급받는 자, 대출채무자) → 원고(양도담보권자)의 유형으로서, A와 B는 통정하여 B 앞으로 담보물을 이전하였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여 유효하게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함.

③ 최초 화주, 거래명세표상의 양도인 및 공급받는 자가 모두 다른 경우

A(최초 화주) → B(양도인) → C(공급받는 자, 대출채무자) → 원고(양도담보권자)의 유형으로서, B 앞으로의 이전은 형식적 거래일 가능성이 높고, C는 무권리자일 뿐 A와 통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물권을 설정 받은 것에 불과하여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원고일부승)

2021나2043911 용역계약 해지무효확인

상고심 계속중

[제1민사부 2022. 6.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자신이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설립 후 재개발조합에도 포괄승계된다고 주장하면서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용역수행자 지위 확인을 구한 사안

□ 쟁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용역계약이 재개발조합에 포괄승계되는지

□ 판단

- 추진위원회가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설립 후 재개발조합에 포괄승계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의 관계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위탁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는 자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함
- 추진위원회는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재개발조합 설립 후의 업무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 역시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님
-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조합의 업무에 관한 부분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자신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님. 위 사항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일부승)

2022나2005251 승낙의사표시

상고심 계속중

[제13민사부 2022. 6. 2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계약을 청약하였으나,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원고의 아들)의 주택 소유권 취득을 이유로 거절함. 이에 원고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무주택자 요건은 임차인 본인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

□ 쟁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임차인)

□ 판단

-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을 의미함(대법원 2014다75462 판결 참조)
- 종전에 구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 기준, 우선 분양전환 등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게 된 것이고,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관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과 그 취지, 문언, 규정 형식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법령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엄격히 한정하면서 입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세대에 속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 만료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에 해당하면 된다는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항소기각(원고패)]

2022나2005213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상고심 계속중

[제21민사부 2022. 6.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2020. 11. 3. 피고로부터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2021. 1. 4.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며, 시공사에 미지급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며, ② 특약으로 잔금일은 시공사 일정 및 상호협의 아래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였고, ③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해제권유보 조항’)
- 원고는 2020. 11. 9. 사전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음
- 피고는 뒤늦게 알게 되어 원고에게 항의하면서 위 2,000만 원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2020. 12. 1. 해제권유보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 원고는 잔금기일인 2021. 1. 4. 나머지 잔금 7,123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를 상대로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함

□ 쟁점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 지급기일 전에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일부 금원을 송금한 경우, 이로써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 매도인의 약정해제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 판단

- ① 원고가 계약일로부터 불과 6일만에 피고에게 잔금 등 지급의무를 이행한다는 취지를 전혀 고지함이 없이 전체 매매대금 대비 5% 남짓에 불과한 금원만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점, ② 기록상 시공사 일정에 변경이 생겼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상호협의 아래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약정 조항은 문언상으로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잔금일을 앞당길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잔금일을 앞당기는 데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2020. 11. 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계약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2020. 12. 1. 해제권유보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 의사표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원고패)

2020나2029116 출자금반환

상고심 계속중

[제35-2민사부 2022. 7. 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외국 회사 비트○○○의 기망행위에 속아 비트○○○코인(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임)에 투자한 원고가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 쟁점

-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에 방조자로 가담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판단

- 다음의 근거로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
 - ① 외국 회사의 사업구조는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구조로, 투자자들의 입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음
 - ② 비트○○○코인은 독자적인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보기 어려움
 - ③ 미국 텍사스주 증권위원회(Texas State Securities Board)도 외국 회사의 운영방식을 ‘폰지 사기’로 보아 2018. 1.경 폐쇄조치를 명함
- 다음의 근거로 피고가 과실로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에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책임제한 50%)
 - ① 피고는 외국 회사의 사업 구조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함
 - ②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말을 듣고 외국 회사에 투자하였음
 - ③ 피고는 외국 회사의 한국 프로모터 또는 최상위사업자의 위치에서 활동하면서 네이버밴드를 운영하는 등 과실로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와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방조행위를 하였음 (원고일부승)

2021나2034214 용역비

확정

[제13민사부 2022. 7. 1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권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부동산 매각 관련 자문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차례 추가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매수인을 제시하고 매매대금을 조율하였으나 결국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후 제3자에게 매각됨
- 원고가 계약에 근거한 용역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면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거나 원고의 용역수행의 결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구한 사건(당심에서 민법 제686조 제3항 내지 상법 제61조, 사무관리, 불법행위 등 예비적 청구를 추가함)

□ 쟁점

- 동일한 당사자들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와 같은 복수의 계약 상호간의 관계
-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대금 청구권의 발생 요건

□ 판단

- 1차 계약에는 용역의 범위, 업무수행권한, 해지, 손해배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후속 계약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바, 후속 계약을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보거나 후속 계약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1차 계약이 축소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계약 체결 관행이나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들은 1차 계약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용역대금의 지급조건, 지급시기, 지연이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후속 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고 판단함
-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주된 업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의향자 주선, 권리 분석, 매각조건의 도출 등인데, 결국 이는 부동산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것인 점, 1차 계약에 ‘용역수수료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성공보수로서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과 그 매매계약이 원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피고들이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원고의 중개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함(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함) [항소기각(원고패)]

2020나2039854 손해배상(기)

확정

[제4민사부 2022. 7.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들 가족은 주거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아파트 화재경보기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업체인 피고1, 아파트 경비원들인 피고3, 4와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2, 아파트 도어락 제조사인 피고5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화재가 감지되더라도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고 화재경보방송이 송출되지 않도록 화재수신반을 조작해 놓은 피고1 소속 직원들의 행위와 원고들 가족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화재수신반의 주경종이 울렸음에도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하여 소리를 꺼버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3, 4의 행위와 원고들 가족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아파트 도어락에 고온경보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등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피고1의 직원들은 화재가 감지되더라도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고 화재경보방송이 송출되지 않도록 화재수신반을 조작해 놓음으로써 업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하였음. 이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탈출 또는 구조, 화재 진화 시점이 적어도 2~3분 이상 앞당겨졌을 것인데, 화재 발생 초기 2~3분의 차이는 손해 발생의 여부 및 발생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충분하므로, 피고1의 위법행위와 원고들 가족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
- 피고 3, 4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화재수신반의 주경종이 울렸으므로 화재발생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오작동으로만 판단하여 소리를 꺼버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하였음. 피고 3, 4 및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 2의 위법행위와 원고들 가족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아파트 도어락에 고온경보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40%로 제한함 (원고일부승)

2021나2039738 구상금

확정

[제14-2민사부 2022. 7.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2개 필지 지상의 3개 건물을 목적물로 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중 1개 건물이 보험목적물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위 누락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보험계약자를 대위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보험설계사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인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 판단

-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12다22242 판결), ① 보험계약자가 의도한 보험목적물이 종전 보험계약과 동일함을 보험설계사도 알고 있었던 점, ② 보험목적물에서 1개의 건물이 누락된 보험계약 청약서는 보험설계사가 출력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하였던 것인 점, ③ 청약서상 보험목적물의 연면적이 종전보다 1개의 건물만큼 줄어들었음에도 보험설계사가 이점을 지적하거나 별도로 설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토대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다음, 보험계약자가 수령하지 못한 보험금에서 책임제한(보험계약자의 책임 50%) 후의 금액을 보험회사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함(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 (원고일부승)

2022나2014835 청구이의

확정

[제13민사부 2022. 7.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피고(업무대행사)가 위 업무대행계약을 추인한 원고(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대행비 청구 소송에서의 확정된 중국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자, 원고가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 쟁점

- 업무대행비 채권 관련 집행권원에 기하여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집행제한계약 또는 부집행합의를 한 것인지(소극) 및 위 강제집행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공사도급계약,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조합가입계약, 아파트공급계약 등에서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자금관리계좌에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주체인 원고의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 변제수령권한을 배제한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하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또한 피고의 업무대행비보다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을 우선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없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은 자금관리계좌 및 그 자금집행순서 등에 관한 약정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대행비 채권 관련 집행권원으로 원고의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는 집행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책임재산 제한, 집행제한계약 또는 부집행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함
- 조합원 또는 수분양자들은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에 관한 원고의 직접 지급 요구에 조합가입계약 등에서 정한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채권을 압류한 피고에 대하여도 이를 사유로 대항할 수 있어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2643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항소기각(원고패)]

2020나2004490 부당이득금

상고기간 중

[제37-1민사부 2022. 8. 1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주택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지목상 또는 현황상 공공시설인 토지들에 대하여 구 공공주택건설법 및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남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함
- 위 무상귀속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2018. 11. 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약 152억 원을 공탁한 후,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위 공탁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행정재산인 토지 중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도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용도 폐지 여부(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인정 여부(적극)
- 이 사건 사업 준공 이전에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적극)

□ 판단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시점은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이고,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행정재산인 토지(‘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함
- 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는 최초 승인된 사업실시계획과 이후 변경승인된 각 지구계획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및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다만 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 중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도 여전히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유지되는 부분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일시적으로 귀속되었다가 개발행위 및 준공 후 다시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가 위 부분에 대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당함)
- 원고는 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를 유상취득할 필요가 없음에도 부득이하게 유상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법률상 무상귀속 시점이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이후라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님 (원고일부승)

2022나2002832 손해배상(국)

상고기간 중

[제5민사부 2022. 8.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2021년도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시험(‘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각 시·도 교육감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였고(‘이 사건 응시제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응시제한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응시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인정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응시제한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가 되고자 하는 응시생의 공무담임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바,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지침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이 사건 응시제한의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응시제한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됨
- 이 사건 응시제한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나,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감염차단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시험장소에서 응시하게 하는 등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응시제한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결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 각 시·도 교육감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의 시험응시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험장소가 마련되었던 점, 중수본 지침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하고 있을 뿐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 자체가 제한된다고는 정하고 있지 않고, 그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2022나20046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고기간 중

[제21민사부 2022. 8.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 종중(매도인)의 회장 A는 2007. 7. 5.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피고(매수인)에게 종중 소유 임야들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음
- 원고 종중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2019. 9. 11.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해당한다고 항변함

□ 쟁점

종중 소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한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의 증명 정도

□ 판단

-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 구성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남자 종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종중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임(대법원 2007다34982 판결, 대법원 2008다8898 판결 참조). A는 위 종중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종중 회장으로 선임되었는데, 피고와의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함
-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은 이유 있음
 - ① 피고는 당시 원고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부동산의 거래에 필요한 제반 서류들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고 조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②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수인이 관계 법령에 정한 제반 서류들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등기신청에 나아간 이상, 그로 하여금 종원 명부, 종중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종중 회의록, 종중 총회 참석자 명단 등을 일일이 대조하여 그 진실성까지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함
 - ③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절차가 위법하여 A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음을 알았다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원고패)

2021라20123 회생

재항고기각 확정

[제40민사부 2021. 6. 1. 선고] <항고, 도산>

□ 사안 개요

- 회생절차에서 본인이 주식 양수인임을 주장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였고,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소송도 진행 중이었는데 결국 회생절차에서는 다툼의 대상이 된 주식(주주명부상 지배주주 소유)에 관하여, 책임있는 주주라는 이유로 전부 무상소각되고, 다른 구 주식은 일부 감자만 되는 차등적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던 사건(부채초과로 주주의 조는 의결권이 없었음)
- 제1심 결정(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항고인 승소, 이에 대한 항소심 진행 중임

□ 쟁점 및 판단

-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 등을 바탕으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지배주주를 주주로 취급한 것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 이 사건 회생계획의 특수성(해당 주식에 관하여만 전부 소각, 다른 주식은 감자)을 고려하여, 다툼은 항고인이 훗날 실제 주주였다고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판단될 경우를 대비한 권리보호조항을 부가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와 같이 권리보호조항(금원 지급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인가된 회생계획을 변경함 (일부인용)

2021라20361 소송비용액확정

확정

[제40민사부 2021. 11. 24.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 개요

환송 전 항소심과 환송 후 항소심에서 각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었던 대상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 쟁점

환송 전 항소심과 환송 후 항소심에서 각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었던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대상사건 심급별로 각기 따로 구분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환송 전 항소심과 환송 후 항소심에서 각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산정기준 [① 항소심 소송목적의 값은 환송 전과 환송 후를 구별하지 않고 환송 후 항소심에서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1회 산정, ② 상고심 소송목적의 값은 환송 전 항소심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상고심에서 불복한 범위를 고려하여 산정함(대법원 1993. 3. 15. 자 93두8 결정의 취지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환송 후 항소심에서 최종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송목적의 값이 대상사건의 각 심급에 일괄 적용됨’을 전제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 인지대 등을 계산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대상사건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을 다시 산정한 사례 (일부인용)

2021라20717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확정

[제40민사부 2021. 12. 15. 결정] <항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라임펀드 투자자로서 판매 은행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사기·착오 취소를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 본안소송 진행 중 피신청인(금융위원회의 명에 따라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들에 관한 신탁계약을 인계받은 자임) 등을 상대로 모펀드의 자금유출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제1심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피신청인이 즉시항고한 사건
- 항고심 계속 중 원고가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대상문서를 변경하여, ‘원고가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부터 현재까지, 다른 자펀드의 환매를 위해 모펀드로부터 자금이 유출된 경우 그 유출금액, 각 거래일자, 환매된 자펀드의 명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모펀드의 현재 잔존가치, 배분을 등 이 사건 펀드의 현재 잔존가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서, 명세서 등’으로 구체화시킴

□ 쟁점 및 판단

-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상문서의 제출을 명함
 - ①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확립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본안소송에서 원고의 손해액인 미회수금액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펀드의 처분이나 그밖의 방법으로 원고가 현재까지 회수하였거나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금원의 액수가 밝혀질 필요가 있음
 - ② 이 사건 펀드는 다른 여러 자펀드들과 함께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된 다음 다른 자펀드 등의 환매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사건 펀드와 직접 관련된 자료만에 기초하여서는 원고의 정확한 미회수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③ 반면 대상문서가 공개된다고 하여 문서소지인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등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 ④ 라임자산운용이 청산 상태로서 업무 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위원회가 제1심의 문서제출명령을 송달받고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문서 등을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에게 대상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변경된 신청 인용)

2021라20957 특별대리인선임

심불기각 확정

[제40민사부 2022. 1. 12. 결정] <항고, 일반>

□ 사안 개요

사건본인 교회의 설립자이자 전 대표자가 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사건 본인에 대한 배임죄의 유죄 판결을 받아 상고심 계속 중인 상황에서, 사건본인 교회 내부의 분쟁 경위, 사건본인 교회의 전 대표자와 현 대표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본인과 현 대표자가 위 부동산을 둘러싼 법률관계 전반에 관하여 이해상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의 전 대표자 및 현 대표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등 소송 제기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구한 사건

□ 쟁점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 제기를 위한 총회 결의나 정관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상반 관계에 있는 전 대표자 및 현 대표자를 상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교회 소유 재산은 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 판결),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교회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건본인의 규약에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사건본인 교회의 총회결의 없이 일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와 같은 소를 제기하는 것은 교회 재산에 관한 총유의 법리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제소 여부에 관한 사건본인 교회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사적자치에도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항고기각)

2021라21026 소송비용액확정

확정

[제40민사부 2022. 3. 30.자] <항고, 소송비용>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들을 상대로 손익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항소심은 아래와 같이 판결을 함. 이에 원고들은 주위적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제1상고부분)과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지연손해금 감액 부분, 제2상고부분)에 대하여, 예비적 피고들은 항소심 패소부분(원금과 감액된 지연손해금, 제3상고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함. 상고심은 위 상고들을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에 대해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예비적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예비적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함

	제1심 법원	항소심	상고심
주위적 피고	전부 패소	항소기각	상고기각
예비적 피고들	전부 승소	항소일부인용 (지연손해금 감액)	상고기각

□ 쟁점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가 전부 기각된 경우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만이 소송목적의 값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주된 청구와 부대청구가 병합되었다가 부대청구부분에 대하여만 독립적으로 항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대청구부분이 독립된 소송목적물이 되므로, 부대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계산하되, 주된 청구의 가액을 한도로 함(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라11 결정 등 참조)
- 제2상고부분은 부대청구에 해당하지만, 부대청구부분에 대하여만 독립적으로 상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독립된 소송목적의 값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된 청구가 있다고 하여도 제2상고부분이 독립된 소송목적의 값이 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상고(제1상고부분)와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상고(제2상고부분)를 모두 포함하므로, 소송비용액에 산입되는 상고심 변호사보수는 각 상고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함 (항고인용)

2022라20019 가처분의의

재항고기각 확정

[제1민사부 2022. 3. 31.자] <항고, 노동>

□ 사안 개요

채권자(갑 회사의 A노조)가 채무자(갑 회사)를 상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B노조(채무자 보조참가인)의 설립이 실제적, 절차적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무자는 B노조와 단체교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을 구한 사건

□ 쟁점

B노조의 설립이 실제적, 절차적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 판단

-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B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그 설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 ① 노조의 조직,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등 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설립은 무효임
 - ② 사용자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는 등 노조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 단체의 임원진이 노조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B노조를 설립한 후 근로자들이 새롭게 그 노조원으로 가입하였다면, B노조는 기존 근로자 단체와 실체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단체로서 노조로 인정됨
 - ③ B노조의 설립 과정 및 활동 내역에 관하여, 사용자가 개입하였다거나 B노조가 근로자의 이익에 반해 활동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B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음
 - ④ 채무자 소속 근로자 약 5,800명 중 약 3,000명이 B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상황이므로, 명백한 반대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이 B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노조라고 판단하고 그에 가입하였다고 보아 그 단결 의사를 존중함이 옳다.
- B노조 설립과정에서 필요한 규약 개정 결의에 의사정족수 미달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결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하자가 노조 설립 자체를 무효로 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후 적법한 총회 결의에 의해 다시 규약을 개정하였으므로 그 하자도 모두 치유되었음 (항고인용)

2021라20641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재항고심 계속중

[제5민사부 2022. 5. 26.자] <항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국내 및 국제 각종 기전을 주최·주관하면서 그 기전의 대국을 “바둑TV” 방송이나 온라인 동영상 등을 통해 중계하는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채권자가 위 대국의 전자기보를 이용하여 바둑 해설 및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게시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성과에 해당하는 대국이나 그 기보를 채무자가 무단 사용한다는 이유로 대국 중계 및 동영상 게시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 쟁점

- 채권자가 주최·주관하는 기전의 대국이나 그 기보가 채권자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채권자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이 사건 대국이 갖게 되는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이 사건 대국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은 이 사건 대국의 참가자들이나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개별적인 착수행위를 떠나 채권자의 명성이나 채권자가 기전의 주최·주관 및 소속 전문기사 선발·양성을 위해 투입한 투자나 노력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대국에 관하여 채권자가 제작하는 전자기보(SGF 파일)의 본질적인 부분 역시 이 사건 대국 그 자체를 정해진 방법으로 기록한 과거의 사실적인 정보임. 이와 같은 정보는 다른 스포츠 경기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채무자는 이 사건 대국 등에 관하여 타이젼 등을 통해 제공받은 전자기보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설 및 강의를 더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이 사건 대국에 관한 채권자의 대국수순의 기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제작한 동영상이 이 사건 대국 그 자체에 대한 중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들은 이 사건 대국이나 그 기보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해설 및 강의를 보기 위하여 채무자의 동영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항고기각)

2021라21374 소송비용액확정

재항고심 계속중

[제40민사부 2022. 6. 8.자] <항고, 소송비용>

□ 사안 개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청구기각판결 및 항소기각판결을 하면서 소송비용 및 항소비용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

□ 쟁점

-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여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함에 있어서 공익소송임을 이유로 변호사비용 감액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대상사건의 청구원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행위를 원인으로 한 구제청구 및 위자료 청구와 공작물책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 등으로서 사건의 난이도가 쉽다고 보기는 어려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 소송비용액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반 규정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면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원칙과 함께 소송의 형태와 경과, 상소심인 경우 불복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불합리와 불평등이 없도록 신중하게 그 부담을 정할 필요가 있으나(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716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각 심급에서 소송비용을 모두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재판이 되었으므로, 달리 감액사유가 없는 이상 피신청인들은 대상사건 소송비용액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 (항고기각)

가 사

2022브2061 소송비용액확정

확정

[제2가사부 2022. 4. 11.자 결정] <가사 항고>

□ 사안 개요

-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마류 가사비송사건 준재심 청구를 각하하고 피신청인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심판이 확정됨. 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자, 사법보좌관은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소송비용액 결정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인가함
- 환송 전 당심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어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함
- 이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대법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는 절차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아 파기환송 결정함(대법원 2020스507).

□ 쟁점

- 마류 가사비송사건 절차비용액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되는지(적극)
- 위 보수 산정의 기준(= 본안사건에 관한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

□ 판단

-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는 그 절차비용에 산입됨(환송결정)
- 가사소송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9조부터 제133조는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에 관한 규정들이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이를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질적 공방을 벌인 결과 심판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 취하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의 보수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이 적용됨
- 다만 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으며, 위 금액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음
- 이 사건 절차비용을 확정함에 있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보수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부를 절차비용에 산입하면서 재량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항고기각)

2022브2079 사전처분

확정

[제2가사부 2022. 6. 27.자 결정] <항고, 사전처분>

□ 사안 개요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 중 신청인(원고, 아내)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피고, 남편)을 상대로 ‘신청인과 신청외 A(딸, 성년)가 함께 거주하는 장소’ 등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이루어짐
- 이후 피신청인의 경정신청에 따라 ‘신청인과 A가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X아파트로 특정하고 피신청인이 위 사전처분 당시 거주하던 Y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점을 추가 기재하는 내용으로 위 사전처분에 대한 경정결정(‘이 사건 경정결정’)이 이루어짐
- 신청인이 이 사건 경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함. 사전처분 이후에 딸 A가 결혼을 하여 신청인이 X아파트와 Y아파트를 오고가며 생활하여 왔고, 피신청인은 부산으로 이사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함

□ 쟁점

- 사전처분에 관한 경정결정의 허용범위
- 사전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경정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경정은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이는 사전처분의 경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경정결정은 위법하지 않음
 - ① 사전처분 당시 신청인은 딸A와 함께 X아파트에, 피신청인은 Y아파트에 각 거주하고 있었으며, 제1심법원은 심문기일 등을 통하여 위 거주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② 이 사건 경정결정은 위 ①의 사정 및 사전처분 이후 제1심법원에 제출된 자료 등에 근거하여 사전처분 당시 신청인의 거주 장소 등을 특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
 - ③ 신청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사전처분 이후의 사정변경에 관한 것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사전처분의 효력 발생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설령 그 주장과 같은 사정변경이 있었다라도 이 사건 경정결정의 위법 여부를 좌우하는 사정이 될 수 없음 (항고기각)

2021브2171(본심판), 2172(반심판), 2173(병합) 상속재산분할

확정

[제2가사부 2022. 7. 27.자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 제1피상속인(갑)의 사망(2003. 10. 26.)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던 중에 그 배우자로서 상속인이었던 제2피상속인(을)이 사망(2017. 6. 30.)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른바 수차상속(數次相續) 사안임

□ 쟁점

- 수차상속이 발생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복수의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꺼번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법원의 심리·판단의 방법(= 각 피상속인의 상속관계별로 개별 판단)
- 유증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적법 여부(= 부적법)

□ 판단

- 민법 제1005조, 제1006조, 제1007조, 제1012조, 제1013조, 제269조와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수차상속이 발생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복수의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꺼번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각 피상속인의 상속관계별로 각각의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청구를 개별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임
- 갑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갑의 사망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유증은 고려할 수 없음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한 상속재산은 상속재산 분할대상에서 제외됨[서울고등법원 2021브2001, 2021브2002결정(확정) 등 참조]. 을은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적법·유효하게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지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본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일부인용)

행 정

2020누38791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제7행정부 2021. 8. 12. 선고] <공정거래>

심불기각 확정

□ 사안 개요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에 정한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보다 매출액이나 자산규모가 큰 납품업자들에 대하여도,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들의 소비실태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사전 약정을 하면서, 예상 판매수량을 기초로 한 납품업자의 원고에 대한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나, 특약사항으로 실제 판매수량에 따라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납품업자가 원고에게 판매촉진비용 추가 분담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그에 따라 실제 납품업자들에게 분담비율 50%를 초과하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킨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에 정한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위반에 해당하는지(적극)

2020누5326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확정

[제6-1행정부 2021. 8. 25.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원고가 대리점에게 대리점이 병원 등에게 공급한 제품의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위법한지 여부(적극)
- 원고가 대리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하나의 병원에는 하나의 대리점만 제품을 공급하도록 대리점별 판매지역 또는 판매병원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인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위법한지 여부(적극) (원고패)

2020누4032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취하 확정

[제6-2행정부 2021. 9. 15.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축산업 및 양계업을 영위하는 갑 회사 등 4개 회사가 종계 생산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이후 갑 회사를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공동행위가 관계 법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인식이나 기대가능성이 없었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갑 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존속회사가 된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과징금납부명령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패)

2020누55888 시정명령등취소

상고심 계속중

[제7행정부 2021. 9. 30.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이유로 분할 전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를 상대로 시정조치를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회사가 분할된 경우,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승)

2021누41978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

심불기각 확정

[제7행정부 2021. 12. 23.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피고가 사업자단체인 원고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결정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사업자단체인 원고가 건축구조기술용역의 최저 또는 적정 단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가기준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원고의 위 대가기준 결정·통지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고패)

2019누58706 시정명령등취소

상고심 계속중

[제3행정부 2022. 2. 17.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피고가 원고 회사들(19개 계열사)이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와인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대규모로 구매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제1항 제1, 4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고, 원고 갑에 대해서는 원고 회사들에 대한 특수관계인으로서 경영기획실을 통하여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김치거래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와인거래가 같은 항 제4호의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원고들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 그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이 사건 김치거래의 정상가격을 ①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독립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사례, ②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거래 사례, ③ 독립된 제3자 간의 유사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에 의한 추단 등에 따라 산정하였는데, 그 산정 방법은 적법하고, 이 사건 김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되었으며, 그 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됨이 인정됨
- 원고 회사들은 이 사건 와인거래 과정에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함이 인정됨
- 다만 원고 갑이 김치 및 와인거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승인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원고일부승)

2019누51675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심불기각 확정

[제7행정부 2022. 2. 17.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 건설기계(굴삭기) 제조업체인 원사업자(원고)가 건설기계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들에게 부품 제작도면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 및 위 제작도면을 납품업체 이원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구 하도급법(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3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의 기술자료 중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이 요구됨
-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원사업자의 기술이 포함 또는 반영되어 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고유 기술과 노하우를 투여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을 해당 부품에 적용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고 인정됨
- 수급사업자가 부품 설계 후 양산 전에 원사업자의 승인을 얻기 위한 용도로 작성하는 ‘승인도’가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 되는 기술적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 이는 상세한 제작도면을 작성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거나 관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함
-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이 금지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판단 기준 [= 원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원사업자나 제3자가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것까지 요하지는 않음]
- 원사업자가 부품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3의 업체에게 부품의 제작 가능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존 납품업체가 작성한 제작도면을 위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한 행위는 원고 자신이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것으로서 구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일부승)

2020누40718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심불기각 확정

[제3행정부 2022. 3. 24.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피고는, 원고 등 8개 운송사가 갑 제철소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물량담합(3호)과 입찰담합(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임

□ 쟁점

-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행위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갑 제철소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존재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용인하고, 입찰이 사실상 형해화되어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 관련매출액 산정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공동행위 중 일부 부분에 대하여 정액과징금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판단

- 단일한 의사와 공동의 목적에 기초하고 있는 점, 합의 대상과 내용이 동일하고, 참여사가 유지된 상태에서 가담 업체가 추가되었으며, 개별 내용이 일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별개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되고, 처분시효 도과의 원고 주장은 배척함
- 갑 제철소가 운송사들 간에 합의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입찰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고, 갑 제철소가 ‘텐더링’ 제도를 두고 있었다거나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투찰가격 수준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음
-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이상 하나의 공동행위 중 일부는 관련매출액을 토대로 정률 방식으로 산정하고, 일부는 정액 방식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그러나 2009년과 2012년도의 정액과징금은 다른 연도에 ‘정률 방식’ 산정보다 현저히 크고 산정방법이 과징금고시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 결국 시정명령은 적법하고,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함(재량권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없어 과징금 전부를 취소) (원고일부승)

2020누5650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심불기각 확정

[제7행정부 2022. 5. 12.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중소형 폐기물소각시설 건설 공사 입찰에 관하여 이에 참여할 의사가 없던 원고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경쟁제한성을 ‘관련시장(해당 입찰)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소극) (원고패)

2021누343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심불기각 확정

[제1-1행정부 2022. 4. 19. 선고] <난민>

□ 사안 개요

원고들은 파키스탄 국적의 부부와 그들 사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피고에 난민인정을 신청함. 이에 대한 피고의 불인정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종족과 사회계급이 다른 상대와 결혼한 여성 및 그 배우자’ 라는 특성이 난민인정의 요건인 박해의 이유가 되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에 해당하는지(한정 적극)
- 대안적 국내피신 주장의 증명책임의 소재와 내용(= 주장하는 자가 피신 가능한 해당 지역을 특정하여 입증하여야 함)

□ 판단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중 ‘집단(group)’ 의 의미(= 보호받아야 할 특성을 공유하고 그로써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유형화할 수 있는 다수의 개인들)
-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종족과 사회계급이 다른 상대방과 결혼한 여성 및 그 배우자’ 라는 특성은, ① 그 결혼이 출신국 사회에서 혼인 관습이나 가족 규범에 어긋나고, ② 이로 인하여 가족과 동족 집단의 박해에 직면하기 쉬우며, ③ 이에 대해 출신국 정부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이 자기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보유함을 의미하며, 거기에 성적 자기결정권, 특히 혼인의 자유와 혼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들어감은 물론이므로,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방과 결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강제로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함. 따라서 단순한 사회적 지탄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수준을 넘어, 폭력과 감금, 협박을 수반한 강요로써 이혼 및 재혼을 강제하는 것 또한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 에 해당함
- 대안적 국내피신은 난민협약이 난민 정의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요건으로서, 대안적 국내피신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피신 가능한 해당 지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하여야 함 (원고승)

2020누569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

[제6-1행정부 2021. 10. 20.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요양병원 근로자인 원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60세에 도달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고, 취업규칙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취업규칙에 정년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정년제 규정이 신설된 취업규칙에 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사례 (원고승)

2021누397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심불기각 확정

[제10행정부 2021. 12. 10.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의 충청본부 대전사업팀의 팀장(3급 사원)으로 근무하던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이 소외인에게 원고의 전산정보시스템(KRS)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소외인이 2년에 걸쳐 KRS에 접속하여 264회에 걸쳐 각종 정보를 조회·열람하고 그와 같이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전문점 제휴업체 선정 및 입찰 과정에 부당하게 참여한 사실이 확인됨
-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자 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부당해고 판정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적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함
- ① 참가인은 소외인에게 특정 정보를 건네주는 수준을 넘어 ‘수많은 기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계정 자체’를 고의적으로 제공
- ② 원고의 대외비가 장기간 외부로 유출되어 원고의 정보 보안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결과 초래
- ③ 소외인이 조회한 정보로 실제 입찰에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침해
- ④ 원고 회사에서 KRS 계정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적발된 다른 근로자들이 받은 징계 수위에 비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으나, 참가인의 비위 정도가 더 중하므로 합리적인 차별임 (원고승)

2021누362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심불기각 확정

[제10행정부 2021. 12. 17.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을 2014. 7. 1. 위촉연구원(실험조교)으로 채용한 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다가 2019. 6.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함
- 참가인이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이에 관한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부당해고 판정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성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적극)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적극)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하여 정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경우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소극)
- 원고가 다른 해와 달리 참가인으로부터 자기업적보고서를 제출받지 않고 2019. 6.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한 데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소극)
- 2019. 6. 계약 갱신 거절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고의 재심판정이 위법한지(적극) [항소기각(원고승)]

2020누52759 해임처분취소

파기환송

[제9행정부 2021. 1. 13.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원고는 검찰공무원으로, 피고(검찰총장)가 원고에게 성희롱,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품위유지위반의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피고가 비위사실의 피해자 등으로부터 가명으로 진술서를 징구하고 비실명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 것이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 여부(소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고,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① 헌법 제27조 제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소송당사자가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데(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 등), 피해자 등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됨
 - ② 증인신문을 할 수 없는 이상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사실조사 및 징계양정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사실이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① 원고의 방어권이 현저하게 제약된 상태에서 제출되어 조사된 증거의 증명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음
 - ② 증인신문을 통해 당사자 주장의 진위를 가리고 의문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탓에 심리 자체가 불가능함
- 피고는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 및 처리지침」에 의하여 피해자 등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박탈하는 중한 처분인 점까지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의 이러한 조치가 관련 법익을 적절하게 비교·형량한 결과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승)

2020누569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심불기각 확정

[제10행정부 2022. 1. 14.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소외 회사(용역업체)에 입사한 용역근로자들인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들은 원고(학교법인)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였고, 일부 참가인의 업무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였음
- 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 지시에 따라 원고가 2017. 9. 1. 참가인들을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직접고용하는 각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2018. 8.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이 사건 통보’)하였고, 이에 참가인들이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가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재심판정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원고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 2, 5호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지(적극) 및 그 의미[=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 2, 5호가 정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은, 업무의 특성상 기간의 정함이 불가피하다거나 기간의 정함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의 효력(= 무효)
- 파견근로자이던 참가인들이 2017. 9. 1. 사용사업주인 원고의 직접고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적극)
- 이 사건 통보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항소기각(원고패)]

2021누4338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

[제10행정부 2022. 1. 14.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근로자인 원고가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소외인(가해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8억 6,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2018. 9.경 취소됨)을 받음
- 원고가 소외인과 그 보험사로부터 위 승소 금액 중 일정 금원을 지급받고 더 이상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이 사건 합의’)를 한 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비와 휴업급여의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요양비와 휴업급여액이 위와 같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실된 적극적 손해액 및 소극적 손해액보다 더 적은 액수이므로 더 지급할 요양비 및 휴업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비 부지급결정 및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원고가 성인임에도 원고의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이 사건 합의가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소극)
-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소극)
-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 하기로 하였거나, 또는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 무 전부를 ‘면제’ 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의 한도 내에서 피고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의 법리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면제할 당시에는 아직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나 위 포기·면제 후 비로소 보험급여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수급권자의 피고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적극)
-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아직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기 전이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을 포기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한지(적극) (원고패)

2021누40722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심 계속중

[제7행정부 2022. 5. 12.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고 성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며 징계감경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규칙(인사규정)을 변경하며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변경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팀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언어폭력 등을 행사한 원고(팀장)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자, 원고가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한 사건

□ 쟁점

-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한지 여부(적극)

□ 판단

- 인사규정의 개정이 행정안전부 지침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등에 따른 것이고, 개정된 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는 징계의 종류·내용에 관한 것이거나 사용자에게 재량이 부여되는 복무규율, 그 중에서도 징계양정의 기준과 임의적 성격의 감경과 관련된 규정이며, 지방공무원 징계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서 불리하게 바뀌는 정도 또한 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근로자의 신분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성 관련 위법행위의 경우, 종전에는 독립된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았던 것을 독립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양정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행위의 성격에 맞는 양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내용에 상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시행 후 2년이 지나도록 근로자들의 특별한 반대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개정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함 (원고패)

2021누5321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

[제7행정부 2022. 5. 19.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원고는 10여 명의 카마스터(자동차 판매원, 그중 한 명이 ‘참가인2’)를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카마스터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참가인1)이 원고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원고가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참가인2와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이 종결되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하자, 이에 참가인들이 교섭요구사실 미공고와 기간만료통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

□ 쟁점

- 사용자가 재심판정을 이행하여 참가인1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고 후속 절차가 진행되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종료된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미공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아니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카마스터’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한정 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판단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사실행위로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사용자는 위 공고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원고는 위 구제명령을 이미 이행하였기 때문에 그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없다. 따라서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고는 교섭요구 사실을 명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부당노동행위의 내용이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갱신의 횟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실태 등과 아울러 사용자가 들고 있는 갱신 거절 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거절 사유가 존재할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된 경위, 동종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근로자에게 한 조치 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향소기각(원고패)]

2021누47754 부당전책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심 계속중**

[제7행정부 2022. 6. 9.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종사근로자인 원고가 종사근로자가 아닌 산별노조 본부 조합원 및 상급단체 조합원 4명(이 사건 출입자들)을 인솔하여 사업장 정문을 통과하면서, 출입 관리 직원에게 노조사무실만을 방문하기로 약속하여 출입을 허락받음
- 이 사건 출입자들은 노조사무실을 잠시 방문했다가 이사회가 열리는 본관 건물로 이동한 후, 본관 현관 앞에서 육성 피켓시위를 하다가 이사회를 마치고 나오는 대표이사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려다 제지 당함
-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인솔책임 소홀’과 ‘감사를 위한 출석요구 불응’을 이유로 전책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가 이를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쟁점

- 종사근로자가 아닌 산별노조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권 및 시설물 이용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판단

-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이 사업장 출입 및 시설물 이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사업장 출입의 목적, 출입 장소, 출입자의 수,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 해당 출입자 또는 출입 단체의 시설관리권 침해 전력, 노사 간에 형성된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러한 기준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시설관리권의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출입자의 신원, 출입 목적 또는 출입 장소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출입을 거부할 수 있음
- 소규모 육성 피켓시위인 점, 장소가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의 홍보·선전 활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공간인 점, 물리적 충돌이나 대표이사의 이동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입자들의 행위는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에게도 허용되는 조합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고, 비록 원고가 출입관리자에게 이들의 방문목적을 속였으나, 이는 사용자의 과도한 출입 제한에 대응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원고가 이들을 인솔하여 사업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제1심판결 중 부당전책에 관한 부분 취소) (원고일부승)

2021누581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심불기각 확정

[제10행정부 2022. 4. 8. 선고] <산재>

□ 사안 개요

영업용 택시기사인 원고가 승객을 외곽 목적지에 데려다 주고 귀환하던 중, 고속도로 빗길 제한속도(약 88km)를 초과한 시속 123km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경추 척수의 압박 등 상해를 입음. 원고는 위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업무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장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의미 내지 적용범위

□ 판단

-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행위가 일응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수반된 불법 내지 비난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회통념상 보험급여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를 행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여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보험정책상의 부작용이 예상되지 아니하는 동시에, 그와 같은 범죄행위가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급여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여전히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원고의 과속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었고, 위 과속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처벌받은 범죄행위가 됨이 인정되기는 하나, 사고에 따른 피해가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 중의 하나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외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징벌로서 보험급여를 박탈할 정도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비난할 만한 과실행위나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허용한다고 하여 자칫 사고의 위험을 높임으로써 보험재정이나 국고에 부담을 초래하고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등 보험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나 결과도 없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수긍함 [항소기각(원고승)]

2021누4563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확정

[제10행정부 2022. 6. 10. 선고] <산재>

□ 사안 개요

- 원고의 배우자인 고인은 2003년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받았다가 2007년 3급으로 상향 재판정을 받고 장해연금 선급금 9,700여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09년 13급으로 하향 재판정되어 진단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6,300여만 원이 부당이득으로 결정됨. 고인이 진폐보상연금 일부를 부당이득금에 충당하는 것에 동의하여 2017. 5.분까지 합계 1,300여만 원이 충당됨
- 고인의 사망 후 원고가 유족으로서 피고(근로복지공단)에 구 산재보험법상 장의비와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급여충당동의서(‘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받고 원고에게 ‘장의비는 100%, 진폐유족연금은 매월 85%씩 부당이득금에 각 충당한다’는 공문을 보냄(‘이 사건 충당처분’). 이후 2019. 9.분까지 합계 4,100여만 원이 충당되었고, 원고가 2019. 9. 26. 900여만 원을 수납함으로써 부당이득금이 모두 징수됨
- 원고는 피고에게 충당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2020. 5. 7. 원고에게 불승인(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충당에 동의하는 원고의 이 사건 동의서의 효력(= 유효)
- 구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구 산재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금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의 법리가 구 산재보험법 제91조의4에 의한 ‘진폐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적극)
- 고인의 사망 후 피고가 유족인 원고에게 지급할 진폐유족연금에 대하여 ‘고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하고 잔액만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충당처분이 위법한지(적극), 위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소극)
- 이 사건 충당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적극)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구 산재보험법 제84조와 충당에 관한 제86조를 기재하지 않았고 잔여 부당이득금의 액수도 기재하지 않았음], 위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충당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소극) [항소기각(원고패)]

2020누6373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확정

[제1-3행정부 2021. 7. 9.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피고가 법인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에 따른 익금산입액에서 부외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실질 귀속을 다투며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사외유출금액의 실질 귀속 여부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 판단

- 갑(원고가 사외유출금액의 실질적 귀속 주체로 주장하는 자)이 퇴사한 이후에도, 갑의 계좌로부터 원고가 대표로 있는 A법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고, 갑이 운영하던 법인뿐만 아니라 원고가 대표로 있는 A법인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도 함께 조사된 점, 갑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도 돈이 입금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 금액이 갑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귀속 불분명으로 원고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재조사 과정에서 갑과 원고의 진술이 어긋나고 계좌내역만으로는 귀속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부외원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세무서장이 실질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항소기각(원고패)]

2020누634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

[제1-2행정부 2021. 7. 16.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도 매수하였으나 지적 및 공부정리 미완료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는데, 그로부터 해당 집합건물 중 1세대를 분양받은 원고가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당초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었다가 법령상 추정사유가 발생한 사안임)

□ 쟁점

원고가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사실상 취득’ 하였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지만,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는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함으로써 대지사용권을 ‘사실상 취득’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취득세 추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항소기각(원고패)]

2020누471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심불기각 확정

[제11행정부 2021. 8. 18.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원고는 단말기 판매 대리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단말기유통법 제4조 소정의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이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주장한 사건

□ 쟁점

- 단말기유통법 제4조 소정의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이 필요경비로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단말기유통법상의 추가지원금 지급 상한 범위가 시장 상황과 그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고, 추가지원금 상한 조항이 이를 위반한 지원금 지급의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말기유통법은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단말기 지원금 지급 실태를 개선하기 어렵고,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실효성 있는 사전적 규제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의 위법성이나 통신시장 및 단말기 유통거래 질서에 미치는 파급력,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의 성격뿐만 아니라 액수 등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하거나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단말기유통법의 제정 경위나 입법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시지원금의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면서도, 그와 별도로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게는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유통점의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유통점간의 과잉 경쟁을 억제하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입법 당시의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그 적정한 허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패)

2019누463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심불기각 확정

[제9행정부 2021. 8. 19.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갑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피고는 갑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관계회사 등 주식이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이 사건 조항’)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업자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증여세를 경정 부과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이 사건 조항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판단기준

□ 판단

- 이 사건 조항은 가업승계 특례 가액 산정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해당액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활동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채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업의 상속 또는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가업의 상속 또는 승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의 이전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볼 수는 없는 점, 가업의 상속 또는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갖춘 법인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 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관련 규정을 잠탈하여 위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위 판단기준에 따라 쟁점주식별로 판단하여 일부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고 일부는 부정한 사례 (원고일부승)

2020누4198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고심 계속중

[제9행정부 2021. 9. 30.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증권회사가 차세대 전산시스템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려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증권회사의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확장형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으로서, 이에 의하여 구현된 금융투자기술은 종전 금융투자기술의 수준보다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어 기존의 업무 절차, 시스템, 서비스의 주요한 개선을 이루었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인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함 (원고승)

2021누378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심불기각 확정

[제3행정부 2021. 10. 14.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국내 통신사업자가 주한미군에 통신용역을 제공하면서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통신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零)세율을 적용해왔는데, 2017. 2.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 영세율 적용 비거주자에서 주한미군 등을 제외하는 괄호규정이 신설됨
- 과세관청이 시행령 개정 전 주한미군에 대한 통신용역 공급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통신용역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등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거주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비거주자의 범위에서 주한미군 등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으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 적용 규정과 취지, 부가가치세법령과 소득세법령, 한미행정협정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주한미군 등에게 공급되는 통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항소기각(원고패)]

2021누315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심불기각 확정

[제9행정부 2021. 10. 28.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원고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건물관리 업무를 중단하였음에도 원고를 건물관리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한 처분의 법적 성격 및 불복 방법
- 관할 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일정률로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에 징수한 처분의 법적 성격 및 불복 방법
- 조세소송에서의 사정판결의 가부(소극)
- 건물관리업무를 중단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무효)

□ 판단

- 과세관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한 납세고지는, 사업자 신고에 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임
-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일정률로 결정하여 징수한 처분은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에 해당함
- 실질적으로 조세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적 쟁송절차의 성격을 가지는 조세소송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소송법 제28조에 규정된 사정판결을 하는 데에 적합한 절차라고 보기 어려움
-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원고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건물관리 업무를 중단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의 휴업신청을 거부하고 집합건물관리단의 공동사업자 명의 변경 내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관리단이 부득이하게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피고도 그 신고 이전부터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에 기초하거나 동일한 하자가 있는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징수처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함 (원고승)

2020누656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확정

[제1-3행정부 2021. 11. 5.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토지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증명
- 자경농지,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판단

-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은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라는 것’으로, 경작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음
- 원고가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영위하던 원양 수산업의 규모, 해외 체류기간, 토지의 규모, 해당 수종의 재배·관리 방법, 잔디밭이 실제로는 운동장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나무 식재 부분은 경계 구획, 조경 목적·운동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항소기각(원고패)]

2021누48153 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 계속중

[제9행정부 2021. 11. 25.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보험회사인 원고들이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을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 판단

-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의 문언, 개정 연혁 및 보험업법령상 책임준비금의 과세표준 공제제도의 공익적 성격과 조세정책적 근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금 지급 후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이와 달리 위 실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 경정을 거부한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2021누37122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심불기각 확정

[제9행정부 2021. 12. 23.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금융위원회가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융감독원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이 사건 조항’)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발표함. 피고들(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원고들(금융회사)에게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보아 90/100의 차등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처분을 고지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조항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에 한정하여 차등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에 대해서까지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해석은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이 사건 조항은 차등과세 대상을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비실명자산)’으로 규정하는데, ‘실명’이 ① ‘실지명의’를 의미하는지, ②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지 견해 대립이 가능함
- 거래자의 확정은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출연자가 예금명의자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계약당사자를 예금명의자로 정한 경우는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 차명거래에 해당하고, 반면 계약당사자를 출연자로 정한 경우는 금융실명법 위반 차명거래(‘합의 차명거래’)에 해당함
- 이 사건 조항의 취지가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와 예금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까지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토대로 하면, 차등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선별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금융기관으로서의 계좌개설 시점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과정에서도 실체적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의 기준이나 실상에도 어긋남
- 과세요건의 해석에 관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고, 다만 그 다음 단계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후 출연자를 금융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할 여지가 있을 뿐임
- 이 사건 계좌가 ‘합의 차명거래’로 개설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①, ②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승)]

2021누46225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심불기각 확정

[제11행정부 2022. 1. 12.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자동차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자, 노숙자인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 쟁점

노숙자인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등록이 이뤄진 사안에서 그에 따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적극)

□ 판단

- 다음의 근거로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함
- ① 원고는 검찰에서 약정서의 글씨체, 녹음된 전화 목소리, 장기간의 노숙 생활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수사기관이 원고의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한 무렵부터는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
- ② 원고는 명의도용을 당하였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는 자동차의 존재나 운행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없었음
- ③ 자동차에는 이해관계인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어, 원고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나 판결문을 없이는 등록명의를 말소할 수 없음
- ④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본다고 해서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침해되는 등의 문제는 없어 법적 안정성은 저해되지 아니함
- ⑤ 기타 사정들, 즉 피고는 자동차의 실질적인 명의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사정, 원고는 노숙자로서 제3자에게 속아 관련 서류를 제공해 준 사정, 자동차는 연수가 10년 이상으로 환가가치가 높지 아니하고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평택시장은 명의도용을 당한 원고에 대한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정 등이 있음 (원고승)

2020누67294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확정

[제3행정부 2022. 1. 27.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A회사는 창고용지를 분양받아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음. 이후 A회사가 B회사에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B회사에 이를 임대하였고, 원고는 A회사를 흡수합병한 뒤 B회사에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
-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뒤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B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이 사건 추정조항’)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거부를 하여,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추정조항의 ‘직접 사용’의 의미
- 이 사건 추정조항의 ‘직접 사용’에 임대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B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대 창고 방식의 물류시설운영업(창고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것인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추정조항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하여야 할 주체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이 사건 추정조항에서의 ‘직접 사용’의 주체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또는 해석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이 사건 추정조항에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요건은, 그 문언상 “당해 재산이 ‘조세감면혜택이 부여될 당시 예정된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라고 해석해야 하고, 이와 달리 그 ‘직접 사용’이 당해 재산을 취득한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합병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이 사건 추정조항의 ‘매각’에 해당하지는 않고, 자가물류방식으로 물류산업이 영위되었더라도 이 사건 추정조항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항소기각(원고승)]

2021누542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 계속중

[제11행정부 2022. 4. 13.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원고 등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하면서 약 18억 원의 공용부분 채납관리비(이하 ‘이 사건 채납관리비’)를 승계하게 되어 이를 납부한 후,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집행은 못함. 피고가 이 사건 채납관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등을 부과처분하자 원고 등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부동산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통해 취득하여 납부한 채납관리비가 ‘간접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판단

- 민사집행법은 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경매 과정에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더라도 위 추가부담금액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지 못하고, 위 추가부담금액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과 실질적 관련성 있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입법취지 역시 매각허가결정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로 인해 추가부담금액이 발생하는 관계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한 것임
- 이 사건 채납관리비는 민사집행법상 매각허가결정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배당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정평가에서 감안되지도 않았음. 그러나 이 사건 채납관리비는 집합건물법 제18조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규약에 따라 매각허가결정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특별승계인에게 인수되는 점, 이 사건 채납관리비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사용·수익과 관련하여 발생되었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과 그 법적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음 [항소기각(원고패)]

2020누55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 계속중

[제8-1행정부 2022. 5. 27.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의 비세출자금기관인 미국육·공군교역처, 주한 미군위문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주한 미군위문협회시설에서 그 시설에 출입이 가능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주한미군 등)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하고(이 사건 공급), 그 거래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음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공급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소극) [원고가 직접 주한미군 등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였고, 원고는 미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고 있는 기관 내지 판매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급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공급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소극)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에서 주한미군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공용을 위하여 국내에서 공급받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물품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이 사건 공급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공급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한미군 등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한 거래에 대하여가 아니라, 휴대전화를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주한미군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급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 패)

2021누5608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 계속중

[제11행정부 2022. 6. 15.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병원 설치·운영 목적으로 취득하여 구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
- 원고가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종합병원은 건축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 취득세 등을 추징 부과함(‘이 사건 처분’)

□ 쟁점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적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가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국민의 보건 복지증진과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것임. 피고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부영주택에 직접 이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부영주택이 이 사건 토지 등을 출연하여 원고를 설립함
 - ② 대한전선부지에 종합병원을 건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 대한전선부지는 하나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대한전선부지 중 20,000㎡ 내외’를 의료시설(종합병원) 용도로 지정한다는 계획지침만 정해져 있었을 뿐 병원부지의 구체적 위치와 면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 ③ 원고는 종합병원을 건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다만 사업의 규모, 행정절차의 지연 등 원고가 그 뜻대로 할 수 없는 다양한 사유로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④ 원고와 부영주택은 종합병원 건축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별다른 공백 없이 계속 진행하였고,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원고승)

2021누682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상고심 계속중

[제1-3행정부 2022. 7. 5.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A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10% 세율을 적용함
- 피고(과세관청)는 세무조사를 통해 A회사 주식 중 44%를 B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B회사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해외법인 C가 다른 해외법인들을 순차 통하여 100% 소유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2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함

□ 쟁점

- 구 중소기업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최다출자자 판단시 간접소유를 포함하는지(적극)
- 중소기업 판단의 기준 시점(=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 판단

-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문언에 더하여 개정경과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최다출자자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간접소유한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① 2009. 3. 25. 개정 시행령에서 간접소유의 경우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이는 규모가 큰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간접소유라는 이유로 해당 중소기업이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② 2011. 12. 28. 개정 시행령에서는 ‘최대주주’를 추가하였는데(이후 이 부분이 ‘최다출자자’로 개정됨), 이는 자산이 5,000억 원 이상인 국내외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 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도 그 대기업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임
 - ③ 최다출자자가 반드시 하나의 기업 또는 한 사람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음
-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제2항의 문언 및 해석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항소기각(원고패)]

2021누668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 계속중

[제8-1행정부 2022. 7. 8.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전자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012. 8.경 △△은행과 투자계약을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은행이 이를 전부 인수하였음
- 그 후 ○○전자의 임원인 원고들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위 발행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후인 2014. 11.경 또는 2015. 8.경에 일부씩 취득하고, 이를 ○○전자의 주식으로 전환하였음
- 피고들은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증여세를 부과·고지함(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규정 취지 [=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양태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
- 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위 조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즉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직접 증여로 볼 수는 없고, ○○전자와 △△은행 사이의 투자계약, 이 사건 신주인수권사채 발행, 원고들의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행사 등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한 일련의 행위(이 사건 거래)를 함께 살펴보아야 함]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관계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적용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항소기각(원고승)]

2021누7258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상고심 계속중

[제3행정부 2022. 7. 14.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원고는 국내 철강의 인도네시아 판매를 중개하거나 인도네시아 스크랩을 국내 회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의 거주자임에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철강 중개수수료와 스크랩 관련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

□ 쟁점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거주자인 원고에게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어디인지(= 인도네시아)

□ 판단

- 원고는 1996년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이후에도 국내에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도 국내에 거주한 점, 원고도 비교적 정기적으로 국내에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철강 중개수수료와 스크랩 판매대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다만 원고는 과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라 그 지위가 결정되어야 함
- ① 먼저 ‘항구적 주거’ 기준에 따르면 국내와 인도네시아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② 다음으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기준에 따르면, 원고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머무르면서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사업 활동이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장소와 내용, 사업 기반이 모두 인도네시아에 있는 점, 원고는 과세기간 동안 연평균 57.75일 동안 국내에서 체류한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연평균 298.5일을 체류한 점, 원고는 인도네시아 내 한인회와 동문회, 교회 등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주된 사회관계를 인도네시아에서 형성하여 온 점, 원고가 구입한 국내 부동산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점 등 직업 및 사업, 사회관계, 재산의 관리장소,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는 인도네시아임. 설령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③ ‘일상적 거소’ 기준에 따라 거주지국을 인도네시아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조세조약상 원고는 인도네시아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거주자로서의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원고승)

2021누3998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기간 중

[제3행정부 2022. 8. 25. 선고] <조세>

□ 사안의 개요

- A회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9사업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 104억 원을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약 34억 7,000만 원씩(‘이 사건 이연익금’) 분할하여 익금 산입함
- 원고의 부친이 2015년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 중에 비상장주식인 A회사 주식이 포함되어 있었음.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순손익액 계산 시 이 사건 이연익금이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쟁점

-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이 사건 이연익금을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적극)
- 이 사건 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이 아닌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평가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취지상 위 규정의 각 호는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양도차익은 2009사업연도에 발생하였고 주식의 상속이 2015년에 이루어진 이상, 양도차익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상속세는 법인세와 달리 기간과세의 성질이 없으므로 세무조정사항을 원래대로 되돌려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실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연익금은 구 상증세법에 따른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 A회사의 2014사업연도 소득에서 이 사건 이연익금 부분을 차감하면 소득금액은 약 10억 원이 되고 결손금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순자산가치평가 방법만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음 (원고승)

2020누55437 원상회복 시정명령처분 취소

상고기각 확정

[제7행정부 2021. 5. 2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관할관청이 형질변경 이후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내리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무단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를 상대로 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승)

2020누49098 업무정지처분 취소

심불기각 확정

[제6-1행정부 2021. 7. 1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1이 A약국을 단독 개설하고 원고2를 봉직약사로 고용하여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원고들 공동 명의로 B약국을 개설·운영하다가, 이후 다시 B약국의 개설자만 원고2 단독 명의로 변경됨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A약국 운영 기간 중 요양급여 부정수령을 이유로 업무정지 20일의 종전 처분을 하였는데, 위 기간 내에 B약국이 계속 운영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해 업무정지 1년의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요양기관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 약국이 형식적으로 원고1 단독개설, 원고들 공동개설, 원고2 단독개설로 순차 변경되었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인적 구성과 물적 시설 및 운영 상태가 같은 상태인 경우 동일한 요양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다소 불명료한 점이 있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소극) (원고패)

2020누62466 제재조치 취소 등

확정

[제9행정부 2021. 8.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사업비 환수를 명하고, 연구책임자인 원고에게 향후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사업비를 환수하고, 참여제한 조치를 시행하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함

□ 쟁점

행정처분이 성립하려면 내부적 성립요건과 함께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이 외부적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됨

□ 판단

이 사건 처분서에는 문서의 수신자로 ○○대학교 총장,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대학교 산학협력단, 원고는 모두 누락되어 있는 점,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하였다는 기재도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서는 관련 기관에 대한 통보서에 해당할 뿐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서로 볼 수 없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으로서의 외부적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처분으로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의 부존재를 확인함 (원고승)

2019누5769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심불기각 확정

[제9행정부 2021. 8.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가 제작하여 신제품인증을 받은 냉동고(‘이 사건 냉동고’)를 피고가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한민국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가 위 제품규격서에 명시된 시험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 실시된 검사결과를 근거로 일간소비전력량 초과를 주장하여 원고가 납품기간 내에 수요기관에 납품하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일간소비전력량’의 의미 해석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일간소비전력량’은 원고 주장 측정 방법에 의해 측정된 소비전력량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 ① 이 사건 계약은 대한민국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 그런데 이 사건 냉동고의 ‘일간소비전력량’의 정의나 측정방법 등을 규율하는 법규성이 있는 법령이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바에 따라 소비전력량을 측정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 ② 이 사건 계약서 등 문언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대한민국은 이 사건 냉동고의 일간소비전력량 및 그 측정 방법에 관하여 제품규격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이 봄이 타당함
- ③ 원고 주장 측정 방법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와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④ 조달청고시가 계약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배제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법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의 소속기관인 피고가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소비전력량을 측정하는 검사를 실시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냉동고가 계약의 제품규격에 부합하는지의 문제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 (원고승)

2021누310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

[제6-3행정부 2021. 9. 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어느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공공기관에 의하여 위 소송에서 문제된 동일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가 이루어졌다면 소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적극, 해당 부분 각하) (원고일부승)

2020누481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심불기각 확정

[제4-2행정부 2021. 9. 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후, 망인의 법률혼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함
-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은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 피고는 유족급여 등 수급권자가 망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장제를 실행한 참가인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등에 관한 권리가 사실혼존재확인판결을 받은 중혼의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혼 배우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망인 사망 당시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인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급여 등 수급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법률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미침
- ② 망인과 참가인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한 가사소송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누구도 소송상으로는 소송 외에서 그와 다른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됨. 더욱이 원고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여하였고,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음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피해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함. 참가인은 1994년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약 25년 동안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 및 유족급여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2020누6792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

[제3행정부 2021. 9. 1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의사인 원고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전후(자격정지기간의 산정 기준을 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관련 형사 사건의 벌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위 개정 후에는 리베이트 수수액으로 변경)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리베이트를 수수함으로써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 쟁점 및 판단

- 원고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전후로 위반행위가 분리된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법원은 하나의 위반행위로서 포괄일죄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 개정 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적용된다고 판시 [항소기각(원고패)]

2021누3855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확정

[제11행정부 2021. 10.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가 자전거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급여를 수령한 데 대하여,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급여 제한사유가 있다고 보아 급여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원고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에 비추어, 교통사고 당시 만 77세인 원고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자전거를 운행하여 비스듬히 중앙선을 넘어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에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원고의 행위가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취소한 사례 (원고승)

2020누60781 파면처분취소

확정

[제6-2행정부 2021. 11. 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도핑검사관 자격을 취소하는 이 사건 통보를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 도핑검사관 자격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도핑검사관 자격 취소 등을 심사하기에 앞서 사전에 원고에게 심사대상 취소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통보에서 도핑검사관 자격 취소사유로 삼지 아니한 사유를 재심의 절차에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도핑검사관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의 내용 및 위반 여부(적극)
- 도핑검사관이 부담하는 비밀엄수의무의 내용 및 위반 여부(소극)
- 취소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도핑검사관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통보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소극) (원고패)

2021누3391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취소청구

상고기각 확정

[제11행정부 2021. 11. 1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선사들인 원고들이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 의하여 ‘환적 컨테이너’에 대하여도 안전운임을 지급하게 되자, 고시가 모법 규정인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4 제2항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국토교통부 고시로 ‘환적 컨테이너’에 대하여 안전운임을 고시한 것이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하여 안전운임을 적용하도록 한 모법 규정인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4 제2항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적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근거로 ‘환적 컨테이너’가 모법 규정의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보아 ‘환적 컨테이너’를 안전운임제의 대상으로 규정한 국토교통부 고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 ① 문언에 의하면, 모법 규정은 피고가 안전운임의 액수를 결정하여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가 운송품목인 ‘수출입 컨테이너’의 의미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
- ② 모법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고시로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은 안전운임일 뿐이고, 모법 규정이 이미 한정된 안전운임제의 대상인 운송품목을 구체화할 수는 없음
- ③ 관세법, 해운법, 대외무역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서도 ‘수출입 컨테이너’와 ‘환적 컨테이너’를 구분하고 있음
- ④ 모법 규정의 입법 과정에서 화물차주의 이익과 화물업계의 이익이 대립되어 첨예한 논란이 있었던 사정에 의하면, 안전운임제의 대상인 운송품목에 대하여는 국회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 규율하는 것이 타당함 [항소기각(원고승)]

2020누4090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확정

[제6-3행정부 2021. 12. 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가 공군에 입대하였다가 사지마비 증세로 의병 전역 후 피고(경기북부보훈지청장)를 상대로 길랑바레 증후군 및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길랑바레증후군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고 길랑바레증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이 거부되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이 길랑바레증후군과 추간판 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을 주된 원인으로 길랑바레증후군과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고일부승)

2020누67492 이사선임처분취소

상고심 계속중

[제3행정부 2021. 12. 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피고참가인(사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이 피고보조참가인인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전·현직이사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9인을 정식이사로 선임 의결하여 이에 따라 피고(교육부장관)가 위 9인을 정식이사로 선임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위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원고들이 적법한 종전 정식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학교법인의 임시이사가 기존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정수를 변경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 전·현직 정식이사 인원이 이사정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제9조의6 제4항에서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 전·현직이사협의체, 교직원 대표기구, 학생·학부모 대표기구, 추천위원회 등으로부터 이사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면서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 비록 학교법인의 이사정수가 9인이고, 학교법인의 현존하는 전·현직 정식이사인 원고들은 4인으로 이사정수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나,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운영 시 설립 목적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정식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전·현직이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위 협의체로부터 원칙적으로 과반수의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한 취지,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라는 문언은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총인원수의 상한을 정해둔 의미라고 해석함이 문언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정위원회가 현존하는 전·현직이사인 원고들이 상지학원의 이사정수 9인의 과반수인 5인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전·현직이사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한 9인의 정식이사 선임 의결은 구 사립학교법 제9조의6 제4항 제1호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에 기한 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 (원고승)

2020누68822 임금

상고심 계속중

[제3행정부 2021. 12.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들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사건 공제규정’)에 따라 초과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음. 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까지 이 사건 공제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제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공제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공제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이 사건 공제규정은 업무의 관행상 조기출근을 하더라도 정식 업무개시 시각 이전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식의 퇴근시간 이후에도 시간외근무를 시작하기까지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외근무의 수행 시에 대부분 식사시간 내지 휴게시간을 가지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고려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시간을 대략적으로 1일당 총 1시간이라고 보고 이를 공제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점, 그 밖에 공무원의 보수·수당의 내용과 성격,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방법 등을 고려하면, 전일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제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한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항소기각(원고패)]

2020누52148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심불기각 확정

[제11행정부 2022. 1. 1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들은 건설폐기물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건설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을 받은 자들로서,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대상안내를 받게 되자 2019년경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함. 이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2018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건

□ 쟁점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미
-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스스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거나 또는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의 신고를 한 것만으로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보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판단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보여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 그 밖에 환경법상의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생활폐기물의 배출자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해석,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9호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전제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징표가 될 수 있을 지언정 곧바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대상자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원고들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그 수리에 공정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리행위의 유효성이나 효력을 넘어서 실제적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인정되어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님. 원고들의 신고수리 처분에 공정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항소기각(원고승)]

2021누4371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심불기각 확정

[제8-3행정부 2022. 1.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가 조달청과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물품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 위 물품을 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조달청장)가 원고에 대하여 물품규격서상의 소프트웨어를 수량대로 납품하지 않아(즉, 소프트웨어를 USB에 저장하여 물품 수량만큼의 USB를 제공해야 함에도 하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원고가 물품규격서상 운영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납품하였는지(적극)

☐ 판단

- 물품 필요조건에 “운영 소프트웨어(License) 1본(copy), 사용설명서 USB 1개” 로 기재되어 있는바, 운영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가 반드시 USB에 저장된 상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수요기관에 제공한 운영 소프트웨어는 동일한 인증키에 등록된 라이선스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 수요기관은 인증키를 이용하여 부여받은 라이선스의 개수만큼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음
- 수요기관은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를 모두 정상 운용하고 있고, 원고에게 운영 소프트웨어의 납품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줌
- 운영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가 수요기관에 모니터의 수량만큼 정상 제공되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USB는 소프트웨어와 설명서의 납품수단인 저장매체에 불과하여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승)

2021누38248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확정

[제6-1행정부 2022. 1.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부사관인 원고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해당 징계사건의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진술인의 개인정보 부분 제외)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징계의결기록, 징계심의의결서 및 투표용지, 징계절차 관련 공문, 원고가 발령받은 약식명령서, 원고에 대한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자력표, 상벌발췌확인서, 지휘관의견서 등)을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군인 징계령,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육군 징계규정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비공개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비공개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항소기각(원고승)]

2020누409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

[제3행정부 2022. 3. 3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싱가포르에 주식을 상장한 중국 갑 회사가 이를 원주(原株)로 한 증권예탁 증권(‘이 사건 증권’)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나 약 2개월 만에 증권 거래가 정지되었음. 피고가 갑 회사 제출의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 신고·공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원고에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자(‘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이 사건 증권신고서 중 갑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부분에 거짓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판단

- 갑 회사의 2010. 9.말 기준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비전문정보임. 인수인이 증권신고서의 작성 주체는 아니지만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등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고, 증권 취득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점, 여기서 상당한 주의는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거짓의 기재 등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말하는 점, 비전문정보에 대해서는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인수인으로서 적절한 검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비록 갑 회사와 공모한 거래은행 직원들 또는 그들로부터 지시받은 제3자가 은행조회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 발급하였고, 갑 회사의 외부감사인이 거래은행에 불시에 방문하게 된 것을 계기로 위와 같은 거짓 기재가 드러나게 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갑 회사가 제시한 자금의 용도나 규모, 보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타당한지에 관한 위험신호를 감지해 그 실재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아니한 것은 인수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한편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지만,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로 인하여 과징금 액수가 변동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패)

2021누53896 국가연구개발참여제한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심불기각 확정

[제8-2행정부 2022. 4. 2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로부터 농업기술연구개발사업 중 한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어 해당 세부과제 보고서를 제출함
- 그 후 피고는 위 세부과제 연구성과 근거자료로 2014년 작성된 논문(이 사건 논문)의 교신저자인 원고가 미성년자인 장00을 이 사건 논문의 제2저자로 표시한 것이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세부과제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년의 제재조치(이 사건 처분)를 함. 이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적극)
 -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 ① 원고가 장00을 논문의 제2저자로 표시한 것이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기한 특별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등 불공정한 의도에 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
 - ② 처분사유의 내용 및 행위의 정도, 논문이 작성된 시기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처분사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③ 원고가 진행 중인 연구가 중단되어야 하는 불이익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음 (원고승)

2021누54028(본소), 2021누54035(반소) 부동산인도 등(본소), 유익비 등 지급
청구의 소(반소) 상고심 계속중

[제8-1행정부 2022. 4. 2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유희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상에 피고가 투자비용을 부담하여 골프장을 신설한 뒤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의 토지사용기간이 2020. 12. 31.에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의 인도를 구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의 이 사건 실시협약상 협의의무 불이행, ②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③ 유익비상환청구권 행사 등을 주장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실시협약상 토지사용기간이 2020. 12. 31.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적극)
- 이 사건 실시협약의 성격이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투자사
업계약이어서 민법상 임대차계약과 그 성질을 달리 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
되는지 여부(소극) [항소기각(원고승)]

2020누59200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

심불기각 확정

[제11행정부 2022. 5. 1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전체가 동일한 아파트 명(名)으로 분양공고되어 공동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A 아파트와 B아파트는 별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준공검사를 받았고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 시점이 상이함. A아파트 주택단지만을 분리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피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자,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아파트 전체가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일부 주택단지가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의 주택단지에도 해당하는 경우, 독자적으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 판단

-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 사업계획승인 시점, 준공시점,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 시점이 모두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아파트와 B아파트는 각각 독립적으로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에 해당함. 동시에 분양공고가 되었다거나 공동으로 관리되어 온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거나 조성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파트 전체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의 주택단지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호 다목의 주택단지에 해당함
-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주택단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언제나 다목에 따른 주택단지를 정비구역으로 하여서만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로서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과 다목에 따른 주택단지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 대상 정비구역을 다목에 따른 주택단지로 정할 것인지 또는 가목에 따른 주택단지로 정할 것인지 여부를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패)

2021누45628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 취소 청구의 소

심불기각 확정

[제3행정부 2022. 5. 1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외국인들을 초청하고자 외국인들을 대리하여 우수 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초청자격 부적격’을 이유로 이를 불허한 사건임

□ 쟁점

- 초청인인 원고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원고가 외국인들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여부와 관련하여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지 여부

□ 판단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도는 외국인의 입국에 관하여 이해당사자인 초청인이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대리함으로써 피초청인인 외국인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법무부에서 마련한 「우수 사설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는 연수 허용기관과 외국인 연수생의 세부운영 기준 및 사증발급 심사기준, 체류관리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초청인에게 사증발급 인정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는 등 국민인 초청인에게 그와 관련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점,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 성격상 외국인이 스스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고, 원고와 같은 연수기관 등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점, 초청자격 부적격을 사유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불허될 경우 국민인 초청인은 자신에게 발생한 사유로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게 됨으로써 연수기관의 존립 여부가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됨
- 다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 자체는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함 [항소기각(소각하)]

2021누74190 무기정학처분취소

확정

[제3행정부 2022. 5.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국립대학법인이 설치·운영하는 A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고, 피고는 A대학교 의과대학장임. 피고가 A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생활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무기정학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쟁점

- 원고에 대한 징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A대학교는 종전에 국립대학이었으나, 이후 국립대학법인 학교로 설립되었고,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된 A대학교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A대학교 징계규정은 징계절차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다룰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전제로 시효를 정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규정은 A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규정인 점, A대학교 총장 임명과 재무회계에 국가가 관여하기는 하나, 이는 A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되었고,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일정 정도 국가 감독을 받도록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소각하)

2021누35485 거부처분취소

상고심 계속중

[제3행정부 2022. 5.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취업제한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중임하여 취업한 B, C, D회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해당함. 피고가 원고의 취업승인신청을 거부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 쟁점

-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에 집행유예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형식,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취업제한의 기산점과 만료점이 모두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를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도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고 설명하거나 이 사건 조항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점,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고 원고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 점, 입법자가 집행유예기간도 당연히 취업제한기간에 포함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다른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이나 다른 법률 규정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당연히 집행유예기간을 취업제한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법원이 입법미비나 공백을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메울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취업제한기간에 집행유예기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업승인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취업승인 신청을 받아 취업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원고승)

2021누3605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상고심 계속중

[제10행정부 2022. 6. 1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2016. 9. 7. 지하 2층, 지상 5층 집합건물에 소재하는 대규모점포(‘이 사건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하고, 그때부터 2018. 7. 31.까지 이를 유지·관리함
- 이 사건 대규모점포의 공개공지에 가설 건축물 67㎡가 무단 설치되었고, 1층에는 가설 건축물 6.2㎡와 3.2㎡가 무단 설치되었는데(‘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 설치 주체·경위 및 지배·관리 주체가 밝혀지지 않았음
-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는 원고에게 위 무단 설치 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 쟁점 및 판단

-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의무자로서,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정하는 철거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지(적극)
-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이 이 사건 대규모점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이 사건 대규모점포 소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또는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소극)
-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 있던 원고가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정하는 ‘그 건축물의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원고가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하여 스스로 철거 등 조치를 함으로써 원상으로 복구할 권원이 있었다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한 철거 등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일부 전유부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있으나, 같은 날 곧바로 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에도 계속 신탁회사가 위 전유부분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경우, 원고가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정하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적극) (원고승)

2021누64223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상고심 계속중

[제9-3행정부 2022. 6.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어린이집 원장인데,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업무 수탁기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의 등급을 종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평가하였음. 원고는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정하는 문서 또는 전자 문서 등의 방식으로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그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함.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평가결과의 공표 규정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정하는 처분 방식의 특칙이라는 취지로 항쟁함

□ 쟁점

- 행정청의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 행위의 처분성(적극)
- 어린이집 평가결과의 공표를 정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등의 규정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처분 방식의 예외로 규정하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부정적 평가등급을 받는 어린이집 입장에서 볼 때, 평가등급의 부여 내지 평가결과의 공표는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의 실질을 가짐.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하거나 재원 예정인 아동의 학부모들에게는 어린이집의 환경·건강·안전 등의 관리실태, 교직원 근무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되며, 이로써 그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원시킬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됨. 그와 같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청의 평가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함. 결국 이 사건 평가등급 부여 행위 내지 그 평가등급의 결정은 항고소송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은 2018. 12. 11.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는데, 평가인증제로 운영되던 시스템을 전면적 의무평가제로 개편함과 아울러, 어린이집 평가의 효과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평가결과의 ‘공표’ 규정이 도입된 것임. 그와 같은 입법 취지가 담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을 해석할 때,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장처럼 평가등급 부여에 관한 처분의 방식을 정한 규정이라고 새길 수는 없음
- 결국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평가등급 부여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2022누30388 재결취소

확정

[제7행정부 2022. 7. 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공립학교 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강원도교육감이 군복무기간 중 일부를 호봉기간에서 제외하였고(‘이 사건 호봉정정 처분’), 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호봉정정에 따라 반환할 금액을 향후 3개월 간 급여에서 정산할 것을 통보함(‘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
-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피고)는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정산금반환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함. 이에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위 각하 재결의 취소를 구함

□ 쟁점 및 판단

- 교육감의 호봉정정 처분이 교원소청심사 대상으로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적극), 처분청이 교원소청심사 대상인 처분을 하고 행정심판법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복절차를 알리는 것을 누락한 경우, 행정심판청구를 받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취해야 할 조치(= 피청구인에 사건을 송부)
 - ①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교원의 호봉을 낮추는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의 봉급 등의 보수에 직접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구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에 해당하여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②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은 소청심사 절차에도 적용됨. 피고로서는 이 사건 호봉정정 처분이 소청심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하여서는 안 되고, 피청구인인 강원도교육감에게 보내서 강원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해야 함
- 정산통보의 처분성(소극)[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호봉이 소급하여 정정되면 그 정정 자체로 인하여 ‘기지급된 보수액’ 과 ‘정정된 호봉에 따라 산정된 보수액’ 의 차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에 의하여 비로소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는 민법상 ‘상계’ 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에 의하여 원고의 보수채권이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음. 이러한 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의 성격,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원고일부승)

2021누59443 징계처분취소청구의 소

상고심 계속중

[제3행정부 2022. 7. 1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① 야간근무 시 10여 회 이상 사무실 내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한 행위, ② 공무 중 음주로 인해 순찰 횡수를 임의로 줄인 행위, ③ 상습적인 부정 초과근무를 한 행위, ④ 술을 마시지 않는 신규직원에게 음주를 조장하면서 협박하고 폭언을 한 행위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음

□ 쟁점

- 징계절차의 위법 및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판단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징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상습적인 부정 초과근무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고, 설령 절차적 위법이 없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한데,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함. 특히 원고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본분을 망각하여 근무기강이 해이하게 된 점, 원고의 행위가 6개월 동안 계속된 점, 원고는 야간근무를 할 때 사실상 감독이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한 점, 신규직원이 원고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다가 공익신고를 한 뒤 결국 청원경찰직을 그만두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패)

2021누5420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확정

[제8-2행정부 2022. 7. 1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상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임
- 피고는 원고가 위 법령을 위반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고, 서비스시간을 늘려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 여기서 ‘거짓’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어떠한 장기요양급여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등의 관련 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부풀려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한 경우를 말하고,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장기요양기관이 과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공단 등을 기망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질 [= 기속행위인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이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그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닳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2021누5126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고심 계속중

[제7행정부 2022. 7.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공공기관인 피고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원고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 제기일은 이 사건 처분을 기준으로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90일)이 지났으나 각하결정을 기준으로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 쟁점

-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소극)

□ 판단

- 정보공개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함
- 정보공개법 제18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한 것이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삼거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 아님
-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소각하)

2021루1149 소송비용액확정

확정

[제9행정부 2021. 11. 26.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및 ‘사업비 용도의 사용금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사건

□ 쟁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3조 제1항은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고 규정하면서(‘합산 원칙’), 그에 대한 예외로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흡수 예외’), 이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위 두 원칙 중 어느 원칙에 따라 산정할 것인지(= 합산 원칙)

□ 판단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의 문언 해석상, 위 법조항의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란, 병합된 비재산권상의 소송과 재산권상의 소송의 법적·사실적 쟁점이 동일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을 넘어, 비재산권상의 소송의 원인 사실로부터 재산권상의 권리·의무가 바로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본안소송은 인지법 제2조 제5항에 정한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산 원칙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이에 따라 이 사건 본안소송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함 (항고인용)

2022루1150 소송비용액확정

확정

[제8-1행정부 2022. 5. 31.자] <항고, 소송비용>

□ 사안 개요

- 피신청인(원고)이 신청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전속판결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함
-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은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함. 그 후 행정소송 제2심판결, 제3심판결에서도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함
- 판결확정 후 신청인이 제1심 법원에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모두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법원이 선고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원고)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의 의미(=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이송 전인 민사소송 제1, 2심판결과 이송판결인 민사소송 제3심판결 및 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대법원에서 행정소송 제1심으로의 파기이송판결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부활의 범위(=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환송 전의 제1심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졌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부활되고, 이러한 법리는 파기이송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 파기이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에 있어 새로운 항소심은 이송 전의 항소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고심에서 제1심으로 파기이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되었을 경우에는 제1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때 이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새로운 항소심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송 전의 항소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함] (항고기각)

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 내지 12호 통합본

2022 년 9 월
서울고등법원 판례위원회
